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습동아리 북소리 결과물

"학교안전관리? 새내기들도 척척!!"

안주무관의

# 차근차근 학교안전 나침반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Korea Elevator Safety Institute

경기도교육청 북부지역소통동아리

경기도교육청

# 새내기들도 척척!~
# 학교안전 나침반 목차


| | | | |
|---|---|---|---|
| 한눈에 보기 | 한눈에 보는 학교안전나침반(마인드맵) | ····· | 1 |
| | 학교안전나침반 연간일정표 | ····· | 2 |
| 가스 안전나침반 | 가스 안전나침반 세부목차 | ····· | 3 |
| | 가스 안전나침반 내용 | ····· | 4~17 |
| 저수조 안전나침반 | 저수조 안전나침반 세부목차 | ····· | 18 |
| | 저수조 안전나침반 내용 | ····· | 19~24 |
| 승강기 안전나침반 | 승강기 안전나침반 세부목차 | ····· | 25 |
| | 승강기 안전나침반 내용 | ····· | 26~52 |
| 전기 안전나침반 | 전기 안전나침반 세부목차 | ····· | 53 |
| | 전기 안전나침반 내용 | ····· | 54~61 |
| 소방 안전나침반 | 소방 안전나침반 세부목차 | ····· | 62 |
| | 소방 안전나침반 내용 | ····· | 63~93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나침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나침반 세부목차 | ····· | 94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나침반 내용 | ····· | 95~128 |
| 인사이동시 | 인사이동시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 ····· | 129~134 |
| 만든사람 | 만든사람들 | ····· | 136 |


TIP!

월중, 연중, 사안발생에 따른 학교안전나침반을 활용하세요~!

# 한눈에 보는 학교안전 나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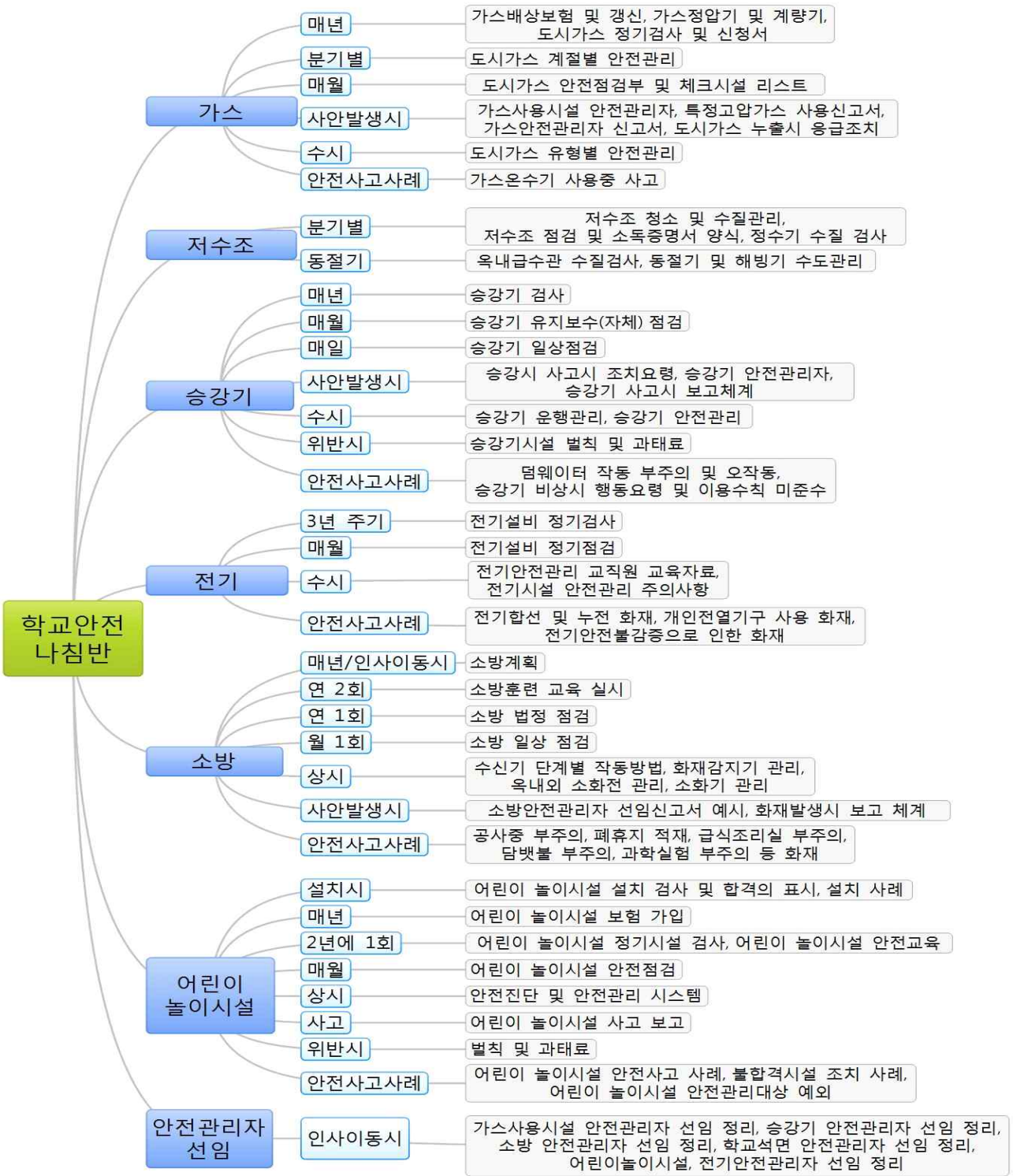

클릭 ↓ 한번에 궁금증 해결!~

# 학교안전 나침반 연간 일정표

| 시기 | 분야 | 업무내용 |
|---|---|---|
| 매월 4일 | 일상점검 | 학교안전점검의 날(전체 분야별) |
| 매일 | 일상점검 | 학교시설물 점검(건축물, 기타설비 등) |
| 매년 | 가스 | 가스배상보험 갱신, 도시가스 정기검사(연1회) |
| | 저수조 | 저수조 청소(연2회), 저수조 수질검사(연1회),<br>방역(연5회, 급식실 6회) |
| | 소방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연2회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실시) |
| | 승강기 | 승강기 정기검사(연1회) |
| 2년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 후 설치검사) |
| | 저수조 |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건축 연면적 5천㎡이상,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학교) |
| 3년 | 전기 | 전기 고압시설 정기검사(고압이외의 유치원 1년/ 고압이외의 초,중등학교 2년) |
| 인사이동 | 가스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br>(최초신고는 시설 사용개시 전) |
| |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br>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 | 승강기 |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 신고 : 선임일로부터 3월 이내 |
| 1월 | 재난 | 재난관리(자체방재) 계획수립 |
| | 소방 | 소방 시설 작동검사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관할 소방서) : 15일 이내 |
| 2월 | 용역계약 | 각종 시설물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
| 3월 | 소방 | 실별 관리책임자(화기단속 및 화재예방 등)지정<br>소방계획서 보완(인사발령에 따른 자위소방대 조직) |
| | 재난 | 해빙기 안전점검 |
| 5월 | 일상점검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구성) |
| 6월 | 소방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일 : 1월~6월)<br>※ 7월~12월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 실시<br>※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관할 소방서) : 15일 이내 |
| 7월 | 재난 | 하절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난대비 안전점검 |
| 11월 | 시설 | 동절기 안전점검 |
| 12월 | 소방 | 소방계획서 작성 |

TIP!

해당 '분야'를 클릭 ↓ 하면 『상세 나침반』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안전나침반


| | | | |
|---|---|---|---|
| 매년 | 가스배상보험, 정압기및계량기, 도시가스 정기검사 및 신청서 | ..... | 4-7 |
| 분기별 | 도시가스 계절별 안전관리 | ..... | 8 |
| 매월 | 도시가스 안전점검부 및 체크시설 리스트 | ..... | 9-10 |
| 사안발생시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가스안전관리자 신고서, 도시가스 누출시 응급조치 | ..... | 11-14 |
| 수시 | 도시가스 유형별 안전관리 | ..... | 15 |
| 안전사고사례 | 가스온수기 사용중 사고 | ..... | 16-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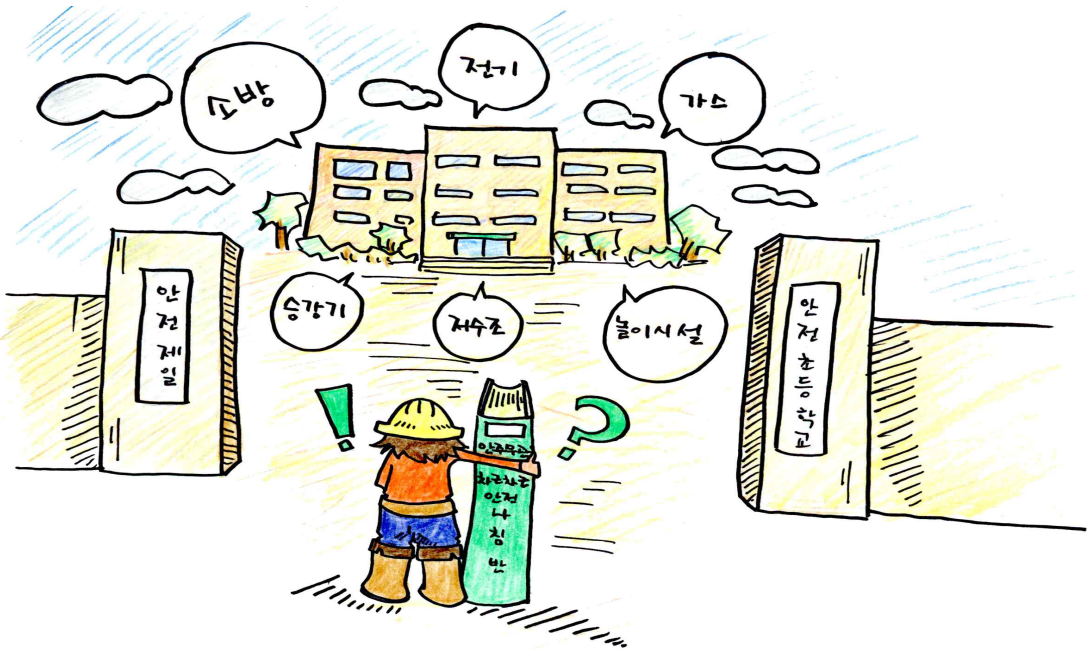

매년

# 가스배상보험 가입 및 갱신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가스배상보험 가입 및 갱신"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1회/년 | 가스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 한국가스안전공사(www.kgs.or.kr)

## 꼭 확인하세요

◦ 월사용 규모별 관리 내용

| 월사용량 | 안전관리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
| 3,000㎥ 미만 | 안전관리총괄자 1인 | 의무 아님 |
| 3,000㎥ 이상<br>4,000㎥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1인 | 의무 가입 |
| 4,000㎥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인<br>안전관리책임자 1인 | 의무 가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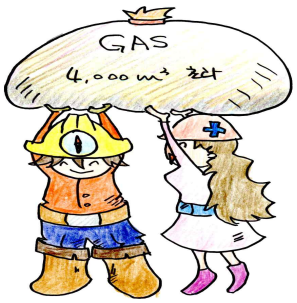

매년

# 가스정압기 및 계량기 관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가스정압기 및 계량기 관리" 나침반

| 시 기 | | 내 용 |
|---|---|---|
| 정압기 | 설치후 3년까지 1회 이상, 이후 4년에 1회 이상 분해 점검 | 고압가스 사용으로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정압기 및 필터를 분해·점검하여야 하며,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점검 함. |
| 계량기 | 매 5년마다 교체 | 정확한 가스계량을 위해 5년마다 검·교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해야 함.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꼭 확인하세요

☆ 작업전

◦ 주1회 이상 정압기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셨나요?

( 정압기 압력 기록계도 확인하셔야 해요. )

☆ 작업후

◦ 검사필증 작성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세요.

☆ 작업중 안전 위해 요인 체크☑

◦ 검사 담당자와 동행하여 안전검사에 꼭 참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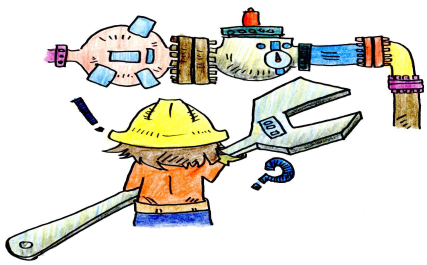

매년

# 도시가스 정기검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도시가스 정기검사"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매년 1회** | 안전한 가스관리를 위해 가스시설 설치공사 완료된 후, 법정 기준일(설치 완료된 날 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 한국가스안전공사(www.kgs.or.kr)

## 꼭 확인하세요

☆ 작업전

◦ 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하셨나요?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검사도 가능합니다. )

☆ 작업후

◦ 검사필증 작성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세요.

◦ 검사완료후 밸브확인 및 가스냄새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작업중 안전위해 요인 체크☑

◦ 검사 담당자와 동행하여 안전검사에 꼭 참여해주세요.

매년

# 도시가스 정기검사 신청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3>

## [ ] 완성검사 [ ]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 | | |
|---|---|---|
| 신청인 | 상호 ○○ 초등학교 | |
| | 성명(대표자) 안전한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 전화번호 031-840-0000 |

| | | | |
|---|---|---|---|
| 사업의 종류 | 학교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
| 사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번길 ○○○ | | |
| 검사범위 | |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25조제1항·제6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 ]완성검사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완공도면(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가스충전시설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검사 | → | 필 증 작 성 | → | 발급 |
|---|---|---|---|---|---|---|---|---|
| 신청인 | | | |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210㎜×297㎜(백상지 80g/㎡)

분기별

# 도시가스 계절별 안전관리

## 《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 》

| 구분 | 내 용 |
|---|---|
| 봄 |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물 손상 여부 확인 |
| | - 시설물 부식 상태 확인<br>- 겨울철 혹한으로 호스 등의 연결부위 헐거움과 손상 여부 확인<br>- 해빙으로 인한 지하 매몰배관 손상될 우려 확인(확인 시 전문장비가 필요하므로 공급자에게 요청) |
| 여름 | 장마철과 휴가철 대비 관리 |
| | - 가스시설 장기간 미사용 시 밸브 잠금<br>- 집중호우로 침수가 예상될 시 중간밸브, 메인밸브도 잠금<br>- 가스시설 침수 후 복구 시는 기기나 설비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점검 후 사용<br>- 가스보일러 미사용시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낙뢰로 인한 기기 훼손을 방지 |
| 가을 | 환절기 대비 가스기기 사용 시작시 안전점검 |
| | - 가스보일러, 난방설비를 가동 전 이상 여부 점검<br>- 가스보일러 시공, 점검은 전문시공회사에 의뢰 |
| 겨울 | 혹한기 대비 가스시설의 동결 조치 |
| | - 정압기등의 동결방지 조치<br>- 배기통 : 막히거나 배기와 연소의 정상여부 확인<br>- 보일러 / 난방기 : 사용중 과열, 소음, 진동, 냄새등을 확인하여 이상시 점검 조치<br>- 환기구 : 환기구는 항상 열어두어 폐가스등이 원활히 빠질수 있도록 함 |

매월

# 도시가스 안전점검부

참고하세요

## 도시가스안전점검부

20 년 월 주
( 월 일 ~ 월 일 )

| 결재 | 계 | 교육행정실장 | 교장 |
|---|---|---|---|
| | | 안전희 | 안전한 |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일자별 상태 | | | | | | 점검결과 | 비고 |
|---|---|---|---|---|---|---|---|---|---|
|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정 압 기 실 | 1. 가스메타 작동 상태 | | | | | | | | |
| | 2. 기기 이상 유무 | | | | | | | | |
| | 3. 시건장치 및 환기상태 | | | | | | | | |
| 밸 브 (자동차단밸브) | 1. 밸브 핸들 부착 여부 | | | | | | | | |
| | 2. 자동 차단변 작동 상태 | | | | | | | | |
| | 3. 밸브 개·폐 여부 | | | | | | | | |
| 배 관 | 1. 손상 여부 | | | | | | | | |
| | 2. 배관 도색 여부 | | | | | | | | |
| | 3. 가스누설 여부(기밀) | | | | | | | | |
| 가스누설경보기 | 1. 경보기 작동 전원 상태 | | | | | | | | |
| | 2. 경보기 벨 작동 상태 | | | | | | | | |
| 가 스 사 용 시 | 1. 가스누설 여부 | | | | | | | | |
| | 2. 가스사용안전수칙 이행 여부 | | | | | | | | |
| 온 도 | | | | | | | | | |
| 가스사용량 학교 | 전주지침 : ㎥, 금주지침 : ㎥ | | | | | | | ㎥, 이번주사용량 : | |
| 가스사용량 급식소 | 전주지침 : ㎥, 금주지침 : ㎥ | | | | | | | ㎥, 이번주사용량 : | |

※ 기재방법 ( 상태 : ○ 양호 △ 보통 × 불량)

매월

# 도시가스 체크시설 리스트

## 《 도시가스시설 체크리스트 》

| 구분 | 내용 | | | | | |
|---|---|---|---|---|---|---|
| 정압기 | 점검항목 | 주기 | | | | |
| | | 일 | 주 | 월 | 년 | |
| | 작동점검 | ○ | | | | |
| | 누설점검 | | | ○ | | |
| | 압력기록장치 점검 | | ○ | | | |
| | 필터 점검 및 교환 | 4년 / 1회 또는 필요시 | | | | |
| | 정압기 분해점검 | 4년 / 1회 | | | | |
| | 도색작업 | 필요시 | | | | |
| | 긴급점검 | 문제 발생시 | | | | |
| | 전위값 확인(마그네슘 손실여부 확인) | | | ○ | | |
| 계량기 | 검침확인 | | | ○ | | |
| | 검정시한 확인 | | | | 5년 | |
| 가스누출차단장치 | 검지부 작동 여부 | | | ○ | | |
| | 경보부 작동 여부 | | | ○ | | |
| | 차단부 작동 여부 | | | ○ | | |
| 배관 | 배관의 부식 여부 및 고정상태 확인 | | | ○ | | |
| | 가스누설 여부 | | | ○ | | |
| 밸브 | 밸브의 작동 여부(중간밸브, 휴즈콕) | | ○ | | | |
| 연소기 | 가스보일러 | | ○ | | | |
| | 가스 냉·난방기 | | ○ | | | |
| | 기타 | | | | | |
| 화기 | 가스설비 주위 화기발생 요소 | | ○ | | | |



사안발생시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나침반

| 구 분 | 내 용 |
|---|---|
| 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월 사용량 4,000㎥ 초과) |
| 선임 신고 | 시·군·구청장 |
| 선임시기 | 시설 사용 개시전(해임·사임·전보로 인한 신고는 변경후 30일이내 선임신고) |
| 자격 | 도시가스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 |

▸ 액화석유가스
- 도시가스의 경우와 동일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외의 시설 저장능력 250kg 초과 시)

▸ 고압가스
- 도시가스의 경우와 동일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제출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30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 꼭 확인하세요

| 구 분 | 내 용 | |
|---|---|---|
| 실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교육종류 | 양성교육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30H) |
| | 법정전문교육(신규) | 최초로 근무하게 되는 안전관리자등 자격부여 교육(7H) |
| | 법정전문교육(보수) | 신규 교육이수 후, 매 3년 되는 해마다 교육(3H) |

# 사안발생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0.5> (앞 쪽)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 고 인 | 상호 ○○ 초등학교 | |
| | 대표자 성명 안전한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세부내용 | 사용처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전화번호: 031-840-0000 ) | |
| | 가스의 종류 | 저장능력 |
| | 사용목적 · 방법 | |
| | 월간 사용량 | |
| | 수용 정원 | |

| | | |
|---|---|---|
| 안전관리자 선임명세 | 안전관리 총괄자 | 성명 |
| | | 자격 |
| | | 자격증번호 |
| | | 선임연월일 |
| | | 취업 동의(인) |
| | 안전관리 책임자 | 성명 |
| | | 자격 |
| | | 자격증번호 |
| | | 선임연월일 |
| | | 취업 동의(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210㎜×297㎜(백상지 80g/㎡)

# 사안발생시 가스안전관리자 신고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3.23>

## [ ] 선임
## 안전관리자 [ ] 해임 신고서
##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 시 |
|---|---|---|

| | | |
|---|---|---|
| 신고인 | 상호 ○○ 초등학교 | |
| | 성명(대표자) 안전한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 전화번호 031-840-0000 |
|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 |

| 구분 | 성명 | 자격 | 자격증번호 | 선임(예정)·해임· 퇴직 연 월 일 | 취업동의(인) |
|---|---|---|---|---|---|
| 선임 | | | | | |
| 해임 | | | | | |
| 퇴직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 [ ]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수수료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다만,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 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사안발생시 도시가스 누출시 응급조치

## 《 도시가스누출 시 응급조치 요령 》

| 구분 | 내용 |
|---|---|
| 공통 | 1.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환기<br>2. 전기기구 사용 금지<br>3. 가스안전공사나 지역관리소에 연락 |
| LNG<br>(액화천연가스) | 1.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br>- 신속히 주밸브 잠그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br>- 연소기 사용을 중지,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상부 부분 통풍시킴.<br>- 소량누출 시 : 검지기 또는 발포성용액으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고무튜브 등으로 응급조치<br>- 대량누출 시 : 주변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br>2. 정압기에서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 시<br>- 정압기 전단측 주 밸브를 신속히 차단<br>- 안전밸브 작동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하고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킴<br>3. 인화되었을 경우<br>- 신속히 주밸브를 잠그고 소화기나 물을 사용하여 화기를 진압 |
| LPG<br>(액화석유가스) | 1. 저장탱크(소형)에서 가스 누출 시<br>- 화기사용을 금하고 누출가스를 확산 시키고 목전, 납전등으로 누출부위 응급조치<br>- 대량 누출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부근의 화기 및 출입을 금지<br>2. 저장탱크(소형)의 배관 및 용기집합대에서 누출 시<br>- 즉시 주밸브를 잠그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br>- 검지기, 발포성용액으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고무튜브등으로 응급조치<br>3. 저장탱크(소형) 및 용기집합대에서 안전밸브가 방출되는 경우<br>-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br>-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시킴<br>- 내부압력이 상승된 경우이므로 살수하여 냉각 |

수시

# 도시가스 유형별 안전관리

## 《 유형별 안전관리 요령 》

| 구분 | 내용 | |
|---|---|---|
| 휴즈콕 미설치 | 예상재해 | - 가스의 다량 유출시 차단 기능이 없어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음 |
| | 안전사용 방법 | - 휴즈콕을 반드시 설치하여 가스의 다량 유출시 자동차단 되도록 함 |
| 호스 및 T형 이음관 부적합 사용 | 예상재해 | - 호스를 규정보다 길게 사용 시 충격으로 이탈될 수 있으며, 호스T형 이음관 사용시 연결부위 이완으로 가스누출 우려 |
| | 안전사용 방법 | - 호스는 3m 이내로 사용<br>- T형이음이 없도록 함 |
| 중간밸브 위치 불량 또는 미설치 | 예상재해 | - 가스누출 시 가스차단이 늦어져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음 |
| | 안전사용 방법 | - 중간밸브는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 배관고정, 도색불량, 환기불량 장소 설치 | 예상재해 | - 배관간의 조임이 느슨해져 가스 누출 우려, 배관 수명 단축<br>- 벽속 등에 설치 시 가스누출시 체류로 인한 폭발 위험 |
| | 안전사용 방법 | - 배관은 도색하여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단단히 고정설치 하여야함(※특히 교실의 리모델링 시 배관이 실내장식물 안에 매립되지 않도록 함) |
| 마감조치 미실시 | 예상재해 | -가스배관에 마감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 위험 |
| | 안전사용 방법 | - 배관설치나 연소기 철거 시 배관 말단에 마감 조치 철저 |
|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 예상재해 |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가스누출, 폭발등의 사고 초래 |
| | 안전사용 방법 | - 연소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 부착여부를 확인 후 사용 |

# 가스온수기 사용 중 사고

## 무슨일이 있었나요?

**○○가스순간온수기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

○ 1998년 학교 내 밀폐된 샤워실에서 육상특기부 학생이 가스 순간온수기를 작동시켜 목욕하다가 가스순간온수기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단시간 내에 치사량을 초과하여 일산화탄소를 배출한 가스순간온수기의 결함

○ 밀폐된 샤워실의 구조상 결함

○ 업무 담당자의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 부재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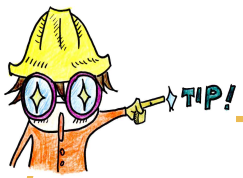


###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가스순간 온수기 설치 위치 선정

○ 소규모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가스순간온수기 사용시 개구부 고려

○ 배출가스 등 위험물질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환기 설비 설치

# 가스온수기 사용 중 화상

## 무슨일이 있었나요?

○○가스순간온수기 사용 중 화상

○ 특수학급 학생이 온수 사용을 위해 수도밸브를 온수방향으로 돌려 사용 하려다 고온으로 온수가 공급되어 화상을 입음.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찬물로 화상 열기를 빼고 병원으로 이송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적정 온수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부주의

○ 업무 담당자의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 부재

(잘라서 활용하세요~)

TIP!

###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온수 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사용

○ 온수 사용시 수도밸브를 적정 구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TIP!

### 실장님, 안전수도꼭지를 설치해 주세요





# 저수조 안전나침반


| | | | |
|---|---|---|---|
| 분기별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관리 | ····· | 19-20 |
| | 저수조 점검 및 소독증명서 양식, 정수기 수질검사 | ····· | 21-22 |
| 동절기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동절기 및 해빙기 수도관리 | ····· | 23-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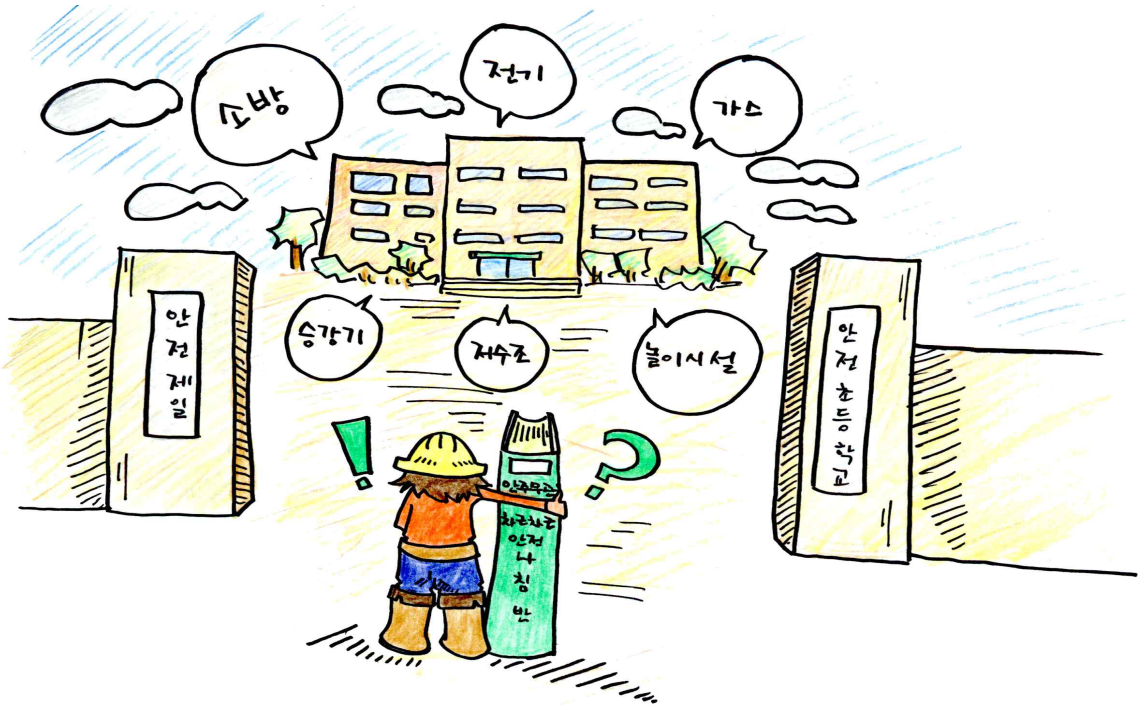

분기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관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관리”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2, 5, 8, 11월 | 물탱크의 각종 미생물과 세균 이끼등의 번식을 막아 깨끗하고 위생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청소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수도법 제33조
- 제33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



## 꼭 확인하세요

☆ 작업전

- 2회는 개학 직전에 실시해주세요.
- 버려지는 물을 줄이기 위해 물탱크로 유입되는 수도 밸브는 미리 잠가 두었나요? (학교마다 물탱크 저장용량에 따라 잠가두는 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 청소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업체에 안내해주세요.

☆ 작업후

- 자동회로 판넬의 차단기(물넘침방지) 및 드레인 밸브(퇴수)는 잠가주세요.
- 저수조로 유입되는 수도밸브는 다시 열어 주세요.
- 건물내 수도꼭지가 개방되어 흐르는 물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 안전체크리스트 ☑

- 물탱크 청소 도중 문을 개방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 점검일지 작성,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 시행 후 결과는 2년간 보관해 주세요.

분기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관리

## 참고하세요

| 구분 | 용도 | 시기 | 기타사항 |
|---|---|---|---|
| 저수조 청소 | 직접음용, 정수기, 조리용 | 3개월 1회 이상 | 1.소방 및 화장실 변기용수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제외<br>2.저수조 청소후에는 관련 필증, 사진자료 등을 2년간 보관 |
| | 세면, 급식기구, 세척 등 | 6개월 1회 이상 | |
| 저수조 수질검사 | 직접 음용, 정수기, 조리용, 세면, 급식기구 세척 등 | 연 1회 이상 | |

## 관련 사진

| 물탱크와 화재 수신기의 연계 | 화재 수신기 |
|---|---|
| 물탱크 청소시 소방밸브를 잠그면 화재 수신기[○○수조]에 점등되어 소방용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음을 표시함.<br><br>☆수신기의 물탱크 용어는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고가수조로 표시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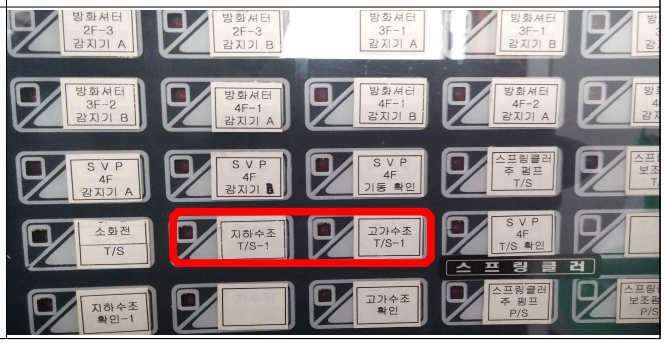 |

| 물탱크 물수위와 고저수위경보기의 연계 | 고저수위 경보기 |
|---|---|
| 물탱크 물이 일정 수위 초과 : 고수위 점등<br>물탱크 물이 일정 수위 이하 : 저수위 점등<br><br>☆물탱크 청소 이외에 수신기에 불이 점등되면 물탱크 물 수위를 꼭! 확인해 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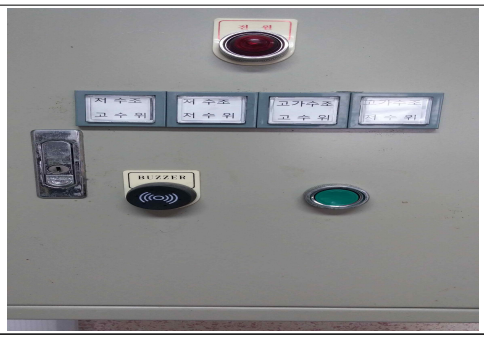 |

분기

# 저수조 점검 및 소독증명서 양식

| 건물의 명칭 | 안전초등학교 |
|---|---|
| 소유자 (관리자) | 안전한 |
| 설치장소 | 경기도 OOO시 OO로 OO번길 OOO |
| 건축물의 용도 | 안전초등학교 |
| 위생진단실시일 | 2014년 12월 20일 (1일) |

| 조사사항 | | 판정기준 | 적부 | 적부 | 적부 |
|---|---|---|---|---|---|
| 1 | 저수조 및 고수조 주위의 상태 | 질병매개 쥐벼기, 오염등이 놓여있지 않을 것 | 0 | | |
| | | 저수조 및 고수조 주위에 고인물, 웅수등이 없을 것 | 0 | | |
| 2 | 저수조 및 고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0 | | |
| | | 출입구나 점검부 등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 0 | | |
| | | 유출관, 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탈락되어 있을 것 | 0 | | |
| 3 | 저수조 및 고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 및 고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 시킬우려가 있는 장비나 기기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0 | | |
| | | 저수조 및 고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0 | | |
| 4 | 저수조 및 고수조 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등의 침식물, 물탱크 내벽 및 내부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벗어짐이 없을 것 | 0 | | |
| | | 수중 및 수면에 부유 물질이 없을 것 | 0 | | |
| | | 내부 도장이 벗겨져 떨어 두려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 0 | | |
| 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품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0 | | |
| | | 점검등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0 | | |
| 6 | 점등관, 통등관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수 없을 것 | 0 | | |
| | | 관 끝부분의 망등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수 있을 것 | 0 | | |
| 7 | 냄 새 |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0 | | |
| 8 | 맛 |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 0 | | |
| 9 | 색 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0 | | |
| 10 | 탁 도 | 물에 이상한 탁업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0 | | |
| 점검 책임자 | | 소속: 직위: 성명: 인 | | | |

저수조 점검표

제20150713호

## 소 독 증 명 서

| 대상시설 | 상 호(명 칭) | |
|---|---|---|
| | 실시면적(용 적) | ㎡ ( 급식실 or 교사동 ) |
| | 소 재 지 | |
| | 관리(운영)자확인 | 직위 성명 (인) |
| 소 독 기 간 | | 2015. . (1일간) |
| 소독내용 | 종 류 | 저농도 감류 분무 및 구서 |
| | 약품 사용 내역 | 살충:살균(디펜드 100배액 3,000cc<br>살균:락티 초부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 호(명 칭) (주) 안전시스템

소 재 지 경기도 OOO시 OO로 OO번길 OOO

성 명(대표자) 안재홍 (인)

소독증명서

분기

# 정수기 수질검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정수기 수질검사”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2, 5, 8, 11월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br>정수기의 총대장균군, 탁도 검사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교육부 20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꼭 확인하세요

◦ 청소 또는 소독 시기를 정기적(매월 초, 개학 직전 등) 으로 설정하고, 수질검사 직전에는 청소 또는 소독 실시 금지(담당공무원 입회 필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조치
(최종[2차]부적합 또는 직전 4회 조사 결과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소모품 정기 교체,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주기적 청소, 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기록 · 유지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 · 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

☆ 안전체크리스트 ☑

◦ 온수 사용시 화상사고에 대비하여 적정온도 설정

## 참고하세요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

◦ 정수 기능을 포함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교육부에서 정수기는 불완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를 권장(교육부 2015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동절기

# 옥내급수관 수질 검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옥내급수관 수질 검사”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2년 주기 | 학교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br>총 7개 항목 검사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

◦ 교육부 20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꼭 확인하세요

◦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날부터 급수관의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기초조사, 정체수 수질 검사)를 실시

◦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 세척

◦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

◦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 검사항목 중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한 경우 전문검사(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급수관을 갱생 또는 교체

※ 갱생이란?

; 녹제거, 내구성이 강한 도료 분사 등의 방법으로 관 내부를 개선하여 재사용 함.



동절기

# 동절기 및 해빙기 수도관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동절기 및 해빙기 수도관리”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동절기, 해빙기 | 수도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 꼭 확인하세요

☆ 동절기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는 습기가 없는 보온재로 채워 동파방지

◦ 계량기 보온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사전 점검

◦ 한파 시 수도꼭지에 물을 조금 흐르게 틀어서 계량기 동파를 방지

◦ 보호함의 틈을 테이프나 헝겊으로 막고, 되도록 보호함 문을 열지 않도록 함

◦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 사용하지 않는 실(과학실, 급식실등)은 퇴수조치

◦ 화장실 난방기 가동으로 동파방지

☆ 해빙기

◦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뜨거운 물을 먼저 붓지 말고 수건을 감싼 뒤 미지근한 물로 녹이기 시작하여 점차 뜨거운 물로 녹임

◦ 수도계량기가 얼어 터졌을 경우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교체함 (동파는 11월 ~ 익년도 3월까지 발생)

◦ 지중(미확인 누수)동파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 증빙 사진과 공사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내부배관이 얼었을 경우 주변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사용

# 승강기 안전나침반


| | | | |
|---|---|---|---|
| 매년 | 승강기 검사 | ····· | 26-28 |
| 매월 | 승강기 유지보수(자체) 점검 | ····· | 29-30 |
| 매일 | 승강기 일상점검 | ····· | 31-32 |
| 사안발생시 | 승강시 사고시 조치요령 | ····· | 33-34 |
|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 35-36 |
| | 승강기 사고시 보고체계 | ····· | 37-38 |
| 수시 | 승강기 운행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 ····· | 39-43 |
| 위반시 | 승강기시설 벌칙 및 과태료 | ····· | 44-45 |
| 안전사고사례 | 덤웨이터 작동 부주의 및 오작동 | ····· | 46-48 |
| | 승강기 비상시 행동요령 및 이용수칙 미준수 | ····· | 49-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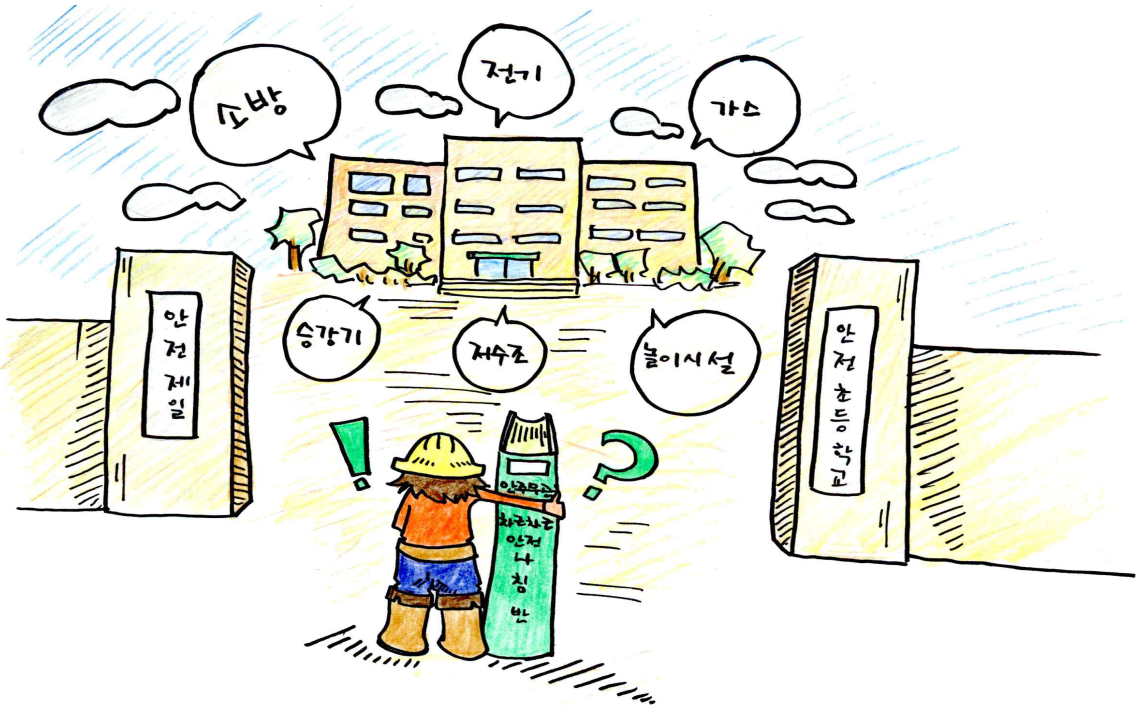

매년

# 승강기 검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승강기 검사"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매년** | 승강기 정기검사<br>- 시기: 검사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br>- 검사유효기간<br>☞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br>☞ 검사유효기간(1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br>☞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

☆ 승강기 검사의 종류

| 구 분 | | 내 용 |
|---|---|---|
| 승강기 검사 | 완성검사 |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실시하는 검사 |
|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1회/년) |
| | 수시검사 |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br>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검사)에 따른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br>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동법 제16조의3(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br>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br>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경우 |

매년

# 승강기 검사

## ☆ 검사완료 후 조치사항

-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11.19.>

(앞쪽)

###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발행번호 : 제 - - - - 호
검사구분 : [ ]완성,[ ]정기,[ ]수시,[ ]정밀안전검사
건물명칭 :
승강기종류 : (설치호기: )
소 재 지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검 사 자 :
검사기관 :

**검사기관의 장** 인

년 월 일

승강기번호(ID)
-

**국민안전처장관** 직인 생략

105mm × 74mm (백상지 120g/㎡)

(뒤쪽)

[안 내]

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발급 즉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부착사진 >




## ☆ 검사 신청 및 수수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afe.or.kr) 참조

매년

# 승강기 검사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1.19.>

## 승강기 검사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① 처리기간<br>완성검사, 수시검사: 15일<br>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20일 |
|---|---|---|
| | | |

| | |
|---|---|
| 상호(건물명) ㅇㅇ 초등학교 | 대표자 성명 안 전 한 |
| 검사의 종류<br>완성검사 [ ], 정기검사 [V], 수시검사 [ ], 정밀안전검사 [ ] | |
| 생년월일 1958.0.0 | 사업자등록번호 127-83-00000 |
|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 사무소 전화번호 031-840-0000 |
| 승강기 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 전화번호 010-1234-5678 |

| | 승강기의 종류 | | 층수 | 수량 | 제조업체 | 유지관리 업체 | 유효기간 만료일 | 검사 희망일 |
|---|---|---|---|---|---|---|---|---|
| | 형식 | 용도 | | | | | | |
| 검사 대상 승강기 | 로프식VVVF | 승객용(장애/전망용) | 총 6 층 | 총 1대 | 00엘리베이터 | 00엘리베이터 | 2015.2.14 | |
| | | | 총 층 | 총 대 | | | | |
| | | | 총 층 | 총 층 | | | | |
| | | | 총 층 | 총 대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2015년 1 월 8 일

신청인 ○○초등학교장 안 전 한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 수수료 |
|---|---|---|
| | ○ 완성 또는 수시검사 신청 시<br>가. 검사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1부<br>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br>다.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규정한 금액 |

### 유의사항

검사기관은 ①란의 처리기간까지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까지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기술서류검토 | → | 승인 | → | 검사 | → | 결재 |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매월

# 승강기 유지보수(자체) 점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승강기 유지보수(자체) 점검"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매월 | 승강기 유지보수(자체) 점검: 유지보수 업체와 함께 점검<br>- 기계실, 구동기 및 풀리(회전바퀴) 공간 점검<br>- 카 실내·외 점검<br>- 승강장 점검<br>- 피트 등 점검 |

## 승강기 점검

☆ 작업 전

◦ 카(car:승객이 탑승하는 승강기몸체) 내부에 사람 또는 짐이 있는지 확인

☆ 작업 중 안전 위해 요인 체크☑

◦ 승강기 점검 중 안내 고지 및 해당 승강기에 접근 탑승을 금하는 안전 시설물(방호장치) 설치

→ 보수 중 승강로 또는 피트 내부의 작업은 반드시 승강장문을 닫은 후 실시 부득이한 경우 바리케이트 등 안전시설물 설치 후 작업

☆ 작업 후

◦ 승강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매월

# 승강기 유지보수(자체) 점검

## 전기식 엘리베이터(승강기) 점검표 (예)

☞승객용은 대부분 전기식 로프식이며 덤웨이터 점검표는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양식 참조

건 물 명 :
모 델 :
점검일시 : 년 월 일
( 호기: 시 분 ~ 시 분 / 호기: 시 분 ~ 시 분 / 호기: 시 분 ~ 시 분)

※ 점검결과상태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하고 기호를 ○로 하고, B, C의 경우는 특기 사항란에 상세 기재할 것

| NO. | 점검항목·장치 | | 상태 (호기) | | | 주기 (회/월) | NO. | 점검항목·장치 | 상태 (호기) | | | 주기 (회/월) |
|---|---|---|---|---|---|---|---|---|---|---|---|---|
| 1 | **기계실, 구동기 및 풀리공간** | | | | | | 3.13 | 균형추측 비상정지스위치 | ABC | ABC | ABC | 1/3 |
| 1.1 | 기계실에의 통로, 출입구 및 점검문 | | ABC | ABC | ABC | 1/1 | 3.14 | 균형추 상부 도르래, 풀리 | ABC | ABC | ABC | 1/6 |
| 1.2 | 기계실내의 조명·환기 | | ABC | ABC | ABC | 1/1 | 3.15 | 상부 화이널리미트스위치 | A C | A C | A C | 1/1 |
| 1.3 | 제어패널 및 캐비닛 | | ABC | ABC | ABC | 1/1 | 3.16 | 승강장의 문 및 문턱 | ABC | ABC | ABC | 1/1 |
| 1.4 | 수권조작수단 | | AB | AB | AB | 1/3 | 3.17 | 도어잠금 스위치 | ABC | ABC | ABC | 1/1 |
| 1.5 | 층상선택기 | | ABC | ABC | ABC | 1/1 | 3.18 | 도어클로저 | ABC | ABC | ABC | 1/1 |
| 1.6 | 상승과속방지장치 | | A C | A C | A C | 1/3 | 3.19 | 이동케이블 및 부착부 | ABC | ABC | ABC | 1/6 |
| 1.7 |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방지수단 | | A C | A C | A C | 1/3 | 3.20 | 승강로 주벽 | ABC | ABC | ABC | 1/12 |
| 1.8 | 권상기 | 감속기어 | ABC | ABC | ABC | 1/3 | 3.21 | 점검문/비상문 | ABC | ABC | ABC | 1/3 |
| 1.9 | 권상기 | 도르래 | ABC | ABC | ABC | 1/6 | 3.22 | 승강로 조명 | ABC | ABC | ABC | 1/3 |
| 1.10 | 권상기 | 베어링 | ABC | ABC | ABC | 1/6 | 3.23 | 비상통화장치 | ABC | ABC | ABC | 1/3 |
| 1.11 | 권상기 | 브레이크 시스템 | ABC | ABC | ABC | 1/1 | 3.24 | 승강로내의 내진대책 | ABC | ABC | ABC | 1/12 |
| 1.12 | 고정도르래, 풀리 | | ABC | ABC | ABC | 1/12 | 4 | **승강장** | | | | |
| 1.13 | 전동기 | | ABC | ABC | ABC | 1/1 | 4.1 | 승강장버튼 및 표시기 | ABC | ABC | ABC | 1/1 |
| 1.14 | 전동발전기 | | ABC | ABC | ABC | 1/1 | 4.2 | 잠금해제 및 열쇠구멍 | A C | A C | A C | 1/1 |
| 1.15 | 조속기 | 카측 | ABC | ABC | ABC | 1/6 | 4.3 | 에이프런 | ABC | ABC | ABC | 1/3 |
| 1.16 | 조속기 | 균형추측 | ABC | ABC | ABC | 1/6 | 5 | **피트** | | | | |
| 1.17 | 기계실 기기의 내진대책 | | ABC | ABC | ABC | 1/12 | 5.1 | 완충기 | ABC | ABC | ABC | 1/6 |
| 2 | **카 실내** | | | | | | 5.2 | 조속기로프 및 기타의 당김 도르래 | ABC | ABC | ABC | 1/3 |
| 2.1 | 카 실내의 주벽·천정 및 바닥 | | ABC | ABC | ABC | 1/3 | 5.3 | 피트바닥 | ABC | ABC | ABC | 1/6 |
| 2.2 | 카의 문 및 문턱 | | ABC | ABC | ABC | 1/1 | 5.4 | 하부 화이널리미트스위치 | A C | A C | A C | 1/1 |
| 2.3 | 카 도어스위치 | | A C | A C | A C | 1/1 | 5.5 | 카 비상정지장치 및 스위치 | ABC | ABC | ABC | 1/1 |
| 2.4 | 문닫힘 안전장치 | | ABC | ABC | ABC | 1/1 | 5.6 | 하부 도르래 | ABC | ABC | ABC | 1/6 |
| 2.5 | 카 조작반 및 표시기 | | ABC | ABC | ABC | 1/1 | 5.7 | 보상수단 및 부착부 | ABC | ABC | ABC | 1/6 |
| 2.6 | 비상통화장치 | | ABC | ABC | ABC | 1/1 | 5.8 | 균형추 밑부분 틈새 | ABC | ABC | ABC | 1/6 |
| 2.7 | 정지스위치 | | A C | A C | A C | 1/1 | 5.9 | 이동케이블 및 부착부 | ABC | ABC | ABC | 1/6 |
| 2.8 | 용도, 적재하중, 정원 등의 표시 | | AB | AB | AB | 1/6 | 5.10 | 과부하감지장치 | ABC | ABC | ABC | 1/1 |
| 2.9 | 정상조명 및 예비조명 | | ABC | ABC | ABC | 1/1 | 5.11 | 피트내의 내진대책 | ABC | ABC | ABC | 1/12 |
| 2.10 | 카바닥 앞과 승강로벽과의 수평거리 | | A C | A C | A C | 1/3 | 6 | **비상용 엘리베이터** | | | | |
| 2.11 | 측면구출구 | | ABC | ABC | ABC | 1/3 | 6.1 | 카 호출장치 | A C | A C | A C | 1/1 |
| 3 | **카위** | | | | | | 6.2 | 소방운전스위치 | A C | A C | A C | 1/1 |
| 3.1 | 비상구출구 | | ABC | ABC | ABC | 1/3 | 6.3 | 1, 2차 소방운전 | A C | A C | A C | 1/1 |
| 3.2 | 문의 개폐장치 | | ABC | ABC | ABC | 1/1 | 6.4 | 비상용 표시 및 표시등 | ABC | ABC | ABC | 1/3 |
| 3.3 | 문의 잠금 및 해제장치 | | ABC | ABC | ABC | 1/1 | 6.5 | 예비전원 | A C | A C | A C | 1/1 |
| 3.4 | 카위 안전스위치 | | A C | A C | A C | 1/1 | 6.6 | 구출수단 | ABC | ABC | ABC | 1/1 |
| 3.5 | 상부도르래, 풀리 또는 스프라켓 | | ABC | ABC | ABC | 1/6 | 6.7 | 탈출수단 | ABC | ABC | ABC | 1/1 |
| 3.6 | 비상정지스위치 | | ABC | ABC | ABC | 1/1 | 6.8 | 물에 대한 보호 | ABC | ABC | ABC | 1/1 |
| 3.7 | 조속기로프 | | ABC | ABC | ABC | 1/6 | 7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 | | |
| 3.8 | 카의 가이드슈우(롤러) | | ABC | ABC | ABC | 1/12 | 7.1 | 음향 및 음성신호장치 | ABC | ABC | ABC | 1/1 |
| 3.9 | 주 로프 및 부착부 | | ABC | ABC | ABC | 1/6 | 7.2 | 문턱 틈새 | AB | AB | AB | 1/3 |
| 3.10 | 과부하감지장치 | | ABC | ABC | ABC | 1/1 | 7.3 | 기타 설비 | AB | AB | AB | 1/6 |
| 3.11 | 가이드레일, 브라켓 | | ABC | ABC | ABC | 1/12 | 7.4 | 대기시간 | AB | AB | AB | 1/1 |
| 3.12 | 균형추 각부 | | ABC | ABC | ABC | 1/6 | | | | | | |

| 특기사항 | 자체 점검자 | |
|---|---|---|
| | 교육수료번호 | |
| | 성 명 | (인) |
| | 전화번호 | |
| |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 | |
| | 성 명 | (인) |
| | 전화번호 | |

매일

# 승강기 일상점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승강기 일상점검"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매일 | 승강기 일상관리<br>- 승강기 주변 문턱 틈새 이물질 제거 등 청결유지 및 물청소 금지<br>- 승강기 내부 조명 상태 확인<br>- 승강기 카 내 버튼 및 승강장 호출 버튼 등 운전 시 정상 작동 여부 확인<br>- 승강기 내부 고장 시 행동요령, 이용자준수사항, 비상연락처 등이 작성된 표준 부착물 부착여부 확인<br>- 승강기 작동 시 이상 소음 확인<br>- 비상열쇠 보관 관리 철저<br>- 도어장치 동작(움직임, 속도 등) 확인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 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
◦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등)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afe.or.kr)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www.kest.or.kr)

## 승강기의 종류

| 종 류 | | 용 도 |
|---|---|---|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br>☞ 학교는 대부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보유 |
| | 화물용<br>(덤웨이터) |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br>☞ 학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1톤 미만의 소형화물(서적,음식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덤웨이터 사용 |
| 에스컬레이터 | | 계단형 또는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
| 휠체어 리프트 | | 장애인용으로 경사형리프트, 수직형리프트가 있음 |

매일

# 승강기 일상점검

| 구 분 | 점검내용 |
|---|---|
|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 | 호출버튼 누르면 점등되는지 확인 |
| | 승강기 도착하고 호출버튼이 소등되는지 확인 |
| | 도착 층에서 호출버튼의 점등이 승강기의 방향과 동일할 때 소등되고 반대방향일 때에는 점등된 채로 유지되는지 확인 |
| 표시장치의 상태 | 승강장 및 카 내의 층 표시와 운전방향표시가 정상적인지 확인 |
| | 승강장의 홀 랜턴이 정상점등 하는지 확인 |
| 카내버튼의 동작 | 행선 층 버튼의 동작 상태를 확인 |
| | 도어 열림 및 닫힘 버튼의 동작 상태를 확인 |
| | 인터폰버튼의 동작 상태를 확인 |
| 도어장치 | 열림 및 닫힘 동작을 확인 |
| 문 닫힘 안전장치 (도어 끼임 방지장치) | 문 닫힘 안전장치를 동작시키면(Safety shoe의 동작 또는 센서감지) 즉시 도어의 닫힘 동작이 멈추고 열리는지 확인 |
| | 문 닫힘 안전장치 누름새의 반력은 적당한지 확인 |
| 도어열림버튼 | 도어가 닫히는 도중이거나 닫혀있을 때 작동 시 도어가 열리는지 |
| | 문 닫힘 안전장치 누름새의 반력은 적당한지 확인 |
| 승강장호출버튼의 리오픈 기능 | 승강기의 도어가 닫히는 도중에 승강장호출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닫힘 동작을 멈추고 즉시 열리는지 확인 |
| | 문닫힘 안전장치 누름새의 반력은 적당한지 확인 |
| 수동조작반 잠금장치 (카내 조작반) | 수동조작반 내에는 여러 가지 운전스위치가 있어서 일반인이 잘못 조작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항상 잠겨 있어야 함 |
| 인터폰 | 인터폰이 관리인이 상주하는 곳과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있는지 확인 |
| | 인터폰은 매우 중요한 장치로 매일 동작 상태를 확인 |
| | 1999년 9월 3일 개정된 검사기준에서 외부에 설치되는 통화장치(인터폰)는 경비실이외에도 관리실이나 전기실,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으로 복수설치하거나 또는 경비실에만 인터폰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버저와 경광등이 경비실 외부 가까이 또는 기준 층 승강장에 설치하여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설치 현장은 의무설치) |
| 기계실 잠금장치 | 기계실은 승강기의 정상운행 제어와 운행 중인 승강기를 급정지, 층간정지, 강제추락 등의 조작이 가능한 곳이므로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 | 최근에는 안전사고 및 승강기 부품의 도난사고가 많아 특히 키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사안발생시

# 승강기 사고시 조치요령

## 승강기 사고

☆ 승강기 사고 시 조치 요령

| 구 분 | 조 치 요 령 |
|---|---|
| 승강기 사고시 조치요령 | - 인명구조 등 필요한 조치<br>- 119구조대(소방서), 보수업체 등에 연락<br>-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br>- 승강기 사고현황을 승강기 검사기관에 보고<br>- 카 내부 승객의 비상구출 |
| 카내 승객의 비상구출 | - 갇힘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수회사로 연락하고 현장으로 가서 갇힌 승객이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구출활동 중임을 알림<br>- 카의 정지위치에 따라서는 구출 작업시 승객은 물론 구조대원도 승강로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br>- 카의 문턱이 승강장의 문턱보다 60㎝ 이상 120㎝ 미만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승강장 도어와 카도어를 열고 승강장에서 접사다리를 카 내에 넣어서 구출 |
| 수권조작에 의한 갇힌 승객구출 | - 주 전원스위치를 차단<br>- 모든 층의 승강장문이 열려져 있으면 닫음<br>- 갇힌 승객에게 카 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림<br>- 브레이크 개방레버를 조작하고 수동핸들을 모터축이나 플라이휠에 끼움<br>- 수동핸들을 서서히 돌려 가까운 층으로 이동<br>- 핸들을 벗기고 문을 연 뒤에 승객을 구출 |
| 화재 시 조치사항 | ○ 빌딩 내에서의 화재<br>-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를 이용해 비상탈출해서는 안됨<br>- 피난은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빌딩내의 모든 승강기는 피난층으로 불러들여 도어를 닫고 정지시킴<br>- 비상용 승강기는 소화활동 등 목적에 맞게 동작시킴<br>○ 기계실에서의 화재<br>- 기계실에서의 화재는 전기기기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활동을 함<br>- 카 내의 승객과 연락을 취하면서 주 전원스위치를 차단<br>- 카가 층의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승객을 구출<br>○ 승강로에서의 화재<br>- 전선이나 레일의 윤활유가 탈 때 발생되는 매연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함 |
| 지진 발생시 조치사항 | - 지진시 멈추는 경우가 생기므로 피난용으로 사용 불가<br>- 진도 3 정도의 지진 후에는 관리기술자, 진도 4 이상의 경우에는 승강기 전문기술자의 점검과 이상유무의 확인을 한 후에 운행을 재개<br>- 지진으로 승객이 갇힌 경우에는 앞의 방법에 따라 구출하고 구출 완료후 상기의 점검·확인이 끝날 때까지 운전을 중지 |

☆ 승강기 사고 및 중대고장을 통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사고 및 중대고장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통보

사안발생시

# 승강기 사고시 조치요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2.23>

## 승강기 사고 현황보고서

| | | |
|---|---|---|
| 일반 현황 | 보고자 안 전 희 | 보고일 2015.7.9 |
| | 건물명 ㅇㅇ초등학교 | 건물용도 교육 |
| | 대표자 성명 안 전 한 | 안전관리자 성명 안 전 희 |
| | 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 연락처 031-840-0000 |
| | 사고 발생 장소(설치호기)<br>○○초 본관동(1호기) | 사고 발생 일시<br>2015.7.9 |
| 승강기 현황 | 승강기 고유번호(ID) 2001-723 | 승강기 종류 및 용도 승객(장애인)용 |
| | 제조업체 00엘리베이터 | 유지관리업체 00 엘리베이터 |
| | 설치일 또는 완성검사 합격일 2006.0.0 | 최종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 | 최종 검사일 2015.2.1 | 최종 검사 결과 합격 |
| 자체점검 현황 | 최종 점검일 2015.6.1 | 점검 결과 이상없음 |
| | 점검자 도 면 준 | 자격 유무 유 |
| 사고 내용 및 조치사항 | 중대사고 여부<br>[ ] 중대사고 [V] 중대사고 해당안됨<br>[ ] 중대사고 여부 판단 곤란(전문조사 필요) | 현장보존 조치 필요 여부<br>[ ] 현장보존 조치 필요,<br>[V] 현장보존 조치 불필요 |
| | 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br>성명: ㅇㅇㅇ , 나이: 만16세 , 성별: 여, 피해정도: 신체 상해는 없음 | |
| | ② 사고 내용 및 응급조치<br>학생이 다리를 다쳐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1층과 3층 사이에서 승강기가 멈춰 작동하지 않음<br>비상통화로 연결되어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유지관리업체 담당자가 출동하여 승강기 문을 열고 학생구조 | |
| |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br>문틈에 이물질이 많이 있고 복도 물청소로 승강장 사이에 물이 유입되어 오작동 발생 승강장 문틈 관리 철저 및 노후 부품 교체 | |
| 비 고 | 사고 내용 설명 그림 등 첨부할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사안발생시

# 승강기 안전관리자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승강기 안전관리자"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인사이동시 | - 선임자: 승강기 관리주체<br>- 선임통보: 선임 하거나 직접 관리 시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 (변경 시 동일)<br>- 자격: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br>(단,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제외)<br>☞ 선임 후 3개월 내에 승강기 관리 교육이수<br>(직접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교육이수) |

###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교육

·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afe.or.kr)
· 교육주기 : 3년에 1회
· 교육이수시간 : 4시간



사안발생시

#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3.2.23>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 ] 선임 [ ∨ ] 변경 통보서

※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 | | |

| 상호(건물명) | 대표자 성명 |
|---|---|
| ○○초등학교 | 안 전 한 |
|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시 ○○로 | 사무소 전화번호 |
| 승강기 소재지 | 전화번호 |
| 경기도 ○○시 ○○로 ○○○번길 ○○○ | 031-840-0000 |

| | | | |
|---|---|---|---|
| ①안전관리자 현황 | 기존 | 성 명 안 전 희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
| | | 전화번호 010-0000-0000 | 해임 또는 교체일자 2015.1.1 |
| | 선임·변경 | 성 명 안 전 해 | 주민등록번호 123456-2234567 |
| | | 전화번호 010-0000-0000 | 선임일자 2015.1.15 |
| | | ②안전관리자 수료번호 EM810-00000 | ③교육이수일 2014.3.1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을 신고합니다.

2015년 1월 15 일

통보인 ○○초등학교장 안 전 한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①란은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공란으로 둔 채 "선임·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선임·변경"란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②,③란은 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이 통보하는 경우 통보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 | |

### 처리절차

| 통보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 → | 전산등록 | → | 회 신 |
|---|---|---|---|---|---|---|---|---|
| 통보인 |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

사안발생시

# 승강기 사고시 보고체계

## 승강기피해발생 상황보고

기관명 : 안전초등학교 (○○시) 보고일 : 201○.○.○.
작성자 : 소속) 안전초등학교 직) 행정실장 성명) 안전희
☏ 학교 행정실 840-○○○○, h·p 010-000-0000
최초보고사항[1] : 201○.○.○. (요일) 00:00
○직 ○○○가 교육지원청 ○부서 ○○○에게 유선보고

| | | |
|---|---|---|
| 일반 현황 | 보고자 | 보고일 |
| | 건물명 | 건물용도 |
| | 대표자 성명 | 안전관리자 성명 |
| | 소재지 | 연락처 |
| | 사고 발생 장소(설치호기) | 사고 발생 일시 |
| 승강기 현황 | 승강기 고유번호(ID) | 승강기 종류 및 용도 |
| | 제조업체 | 유지관리업체 |
| | 설치일 또는 완성검사 합격일 | 최종 검사기관 |
| | 최종 검사일 | 최종 검사 결과 |
| 자체점검 현황 | 최종 점검일 | 점검 결과 |
| | 점검자 | 자격 유무 |
| 사고 내용 및 조치사항 | 중대사고 여부<br>[ ] 중대사고 [ ] 중대사고 해당안됨<br>[ ] 중대사고 여부 판단 곤란(전문조사 필요) | 현장보존 조치 필요 여부<br>[ ] 현장보존 조치 필요,<br>[ ] 현장보존 조치 불필요 |
| | 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 | |
| | ② 사고 내용 및 응급조치 | |
| |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 | |
| 향후대책 | | |

1) 학교의 교육지원청 최초보고사항 기재. 사고발생후 즉시보고하지 않은 경우, 간단명료하게 사유 기재

사안발생시

# 승강기 사고시 보고체계

**※ 참고자료(학교 일반현황)**

– 소재지(주소) :

| 설립 구분 | 개교 년월일 | 교장 | 행정실장 (직급,성명) | 학급수 (학급) | 학생수 (명) | 교원수 (명) | 직원수 (명) | 비고 |
|---|---|---|---|---|---|---|---|---|
| | | | | | | | | |

– 시설 현황

| 보통교실 | 특별교실 | 관리실 | 창고 | 화장실 | | | 비고 |
|---|---|---|---|---|---|---|---|
| | | | | | | | |

– 기타 현황

붙임 : 1. 피해현장 사진 각1부.
2. 학교 위치도 및 승강기 배치도 1부.

수시

# 승강기 운행관리

## 승강기 운행 관리

☆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운행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기돼 있어야 함

1. 운행관리자의 직위와 성명
2. 비상열쇠의 종류, 관리책임자 및 관리위치
3. 보수업체의 회사명과 비상연락망
4. 인명사고 발생 시 긴급후송이 가능한 병·의원의 연락처

☆ 승강기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승강기 고장·수리일지에 승강기의 고장 시 연락 시간, 보수자 도착시간, 수리완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장원인 및 조치 내용을 기록

☆ 승강기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보고

1. 승강기 중대사고 신고
   ① 승강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발생
   ②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고시기: 지체 없이
2. 승강기 고장
   ①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구간 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②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③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④ 보고시기: 3일 이내

☆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승강기 제원
② 승강기 검사확인증
③ 안전이용수칙 및 긴급비상연락망

수시

# 승강기 운행관리

☆ 승강기에 부착해야 하는 표준부착물의 사이즈 및 부착위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묻고 답하기(Q&A):**

1.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등 이용안전수칙 부착물의 사이즈 및 승강기 내 부착위치는?
2. 승강기의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부착물의 사이즈 및 승강기 내 부착위치는?
3. 승강기의 "손대지 마세요, 기대지 마시오" 주의표지의 사이즈 및 승강기 내 부착위치는?
4. 승강기 검사필증의 승강기 내 부착위치는?

☞ 승강기검사기준(국민안전처고시) “모든 경고, 표시 및 라벨 등은 지울 수 없고 읽기 쉬우며 손쉽게 이해(필요할 경우 표지 또는 기호에 의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찢어질 수 없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며 한글(필요시 다른 언어 병기 가능)로 기재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카 내의 정격용량 및 정원은 검사기준 15.2.1항에 따라 글자크기(한글, 영문대문자 및 숫자는 10 ㎜ 이상, 소문자는 7 ㎜ 이상)로 표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이용자 준수사항, 적재하중(최대정원) 및 검사필증은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카 내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용자 준수사항 등 부착물 크기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카문 및 승강장문의 “손대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경고 표시는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출입구 전면 바닥으로부터 1.8 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수시

# 승강기 운행관리

▶ 승객용 승강기 카내 부착용 안전규칙
규격 : 155mm*215mm




< 덤웨이터(화물용) 안전규칙 >
규격 : 200mm*150mm




< 승강장문 부착용 안전스티커 >
규격 : 100mm*125mm






수시

# 승강기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

☆ 승강기 안전 이용 교육과 고장 시 행동요령 및 안전 이용 수칙

◦ 고장 시 행동요령

· 승강기가 도중에 정지하면 마음대로 탈출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시다.
· 비상환기구는 탈출구가 아니므로 열려고 하지 맙시다.
· 구조를 요청하여 구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굉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있으면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지 맙시다.
· 화재가 난 때는 승강기를 타지 마시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합시다.

◦ 승강기 안전 이용 수칙

·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합니다.
·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턱에 이물질이 끼거나 틈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도어개폐기 출입문에 기대면 손이나 옷자락이 딸려 들어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승강기 안에 갇히면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의 구조를 받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립시다.

수시

# 승강기 안전관리

☆ 덤웨이터 주요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

◦ 주요 위험 요인

- 신체 일부가 운반구와 출입문 사이에 협착
- 제어장치의 이상 작동으로 운반구 낙하
- 와이어로프 절단,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인한 운반구 낙하
- 운반구의 적재하중 이상 초과하중 적재로 인한 운반구 낙하
- 배전반의 전기설비 누전으로 인한 감전

◦ 안전 대책

- 출입문 인터록장치(리미트스위치) 정상작동 확인 및 안전커버 설치
- 전기설비 및 와이어로프 소선 절단, 마모 등 점검
- 청소 · 점검 · 검사 시 반드시 전원차단 후 실시
- 인원탑승 금지 및 출입구 문의 도어록, 기타의 안전장치 또는 적재하중, 사람의 탑승 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명시한 표지판 취부
- 출입문 미사용시 고정(시건장치)장치 설치

위반시

# 승강기 시설 벌칙 및 과태료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승강기 시설 벌칙" 나침반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벌 칙 |
|---|---|---|
|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 법 제2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 법 제2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6조의 4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법 제2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 법 제2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법 제1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 법 제2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2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승강기 시설 벌칙 및 과태료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승강기 시설 과태료" 나침반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금액 |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5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법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 법 제21조(보고 및 검사)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5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법 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6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덤웨이터 도어

## 무슨일이 있었나요?

**덤웨이터 사용 중 물건을 꺼내기 위해 손을 넣는 순간 도어가 닫혀 발생한 사고(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2003.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5건의 사고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에서 피해자가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 덤웨이터에 그릇을 싣고 카를 2층으로 올린 후, 피해자가 그릇을 내리기 위해 카내로 손을 넣은 순간 상·하 개폐 출입문이 닫히면서 손등의 뼈가 골절됨. (중상 3명, 경상 2명)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피해자가 물건을 모두 내린 후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을 미처 빼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

○ 급식종사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미흡

----------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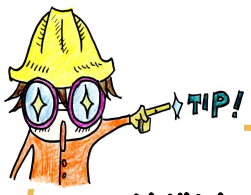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관리주체를 통한 "덤웨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자 안전수칙 표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홍보 강화

○ 승강기 법정검사 및 자체 검사 시 사용상의 주의점 등을 적극 안내

○ 1일 1회 급식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덤웨이터 작동 부주의

## 무슨일이 있었나요?

**덤웨이터 승강장문의 인터록(안전정지장치) 불량으로 이용자가 피트로 추락한 사고(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2001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7건의 사고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의료시설 등에서 승강장문의 인터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덤웨이터 피해자가 배식차를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층에서 버저가 울리자 카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승강장문을 열고 배식차를 밀고 들어가 배식차와 함께 피트로 추락함.(중상 7명, 사망 2명)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119전화 및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인터록의 유지보수 부실

○ 덤웨이터가 제 층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함.

----------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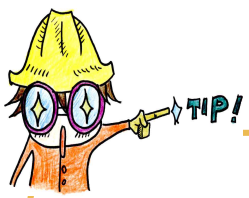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관리주체가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승강장 부근에 주의표지판을 부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승강기 법정검사 및 자체 검사 시 사용상의 주의점 등을 적극 안내

○ 1일 1회 급식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덤웨이터 오작동

## 무슨일이 있었나요?

**덤웨이터에 사물을 싣던 중 카의 상승운전으로 협착 된 사고(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1994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5건의 사고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교직원이 식당 주방에서 2층으로 소형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1층 승강장 문을 연후 카 내로 상반신을 넣고 화물을 싣던 중 카가 갑자기 상승하여 승강장 상부 문틀과 카바닥 사이에 협착 됨.(경상 1명, 중상 8명, 사망 7명)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119전화 및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건물 소유주가 일반 개인과 임대계약한 시설물로써 계약 당사자들끼리 안전책임을 전가하던 중 보수업체에 보수료 미지급으로 자체검사 등 유지관리가 중단된 상태에서 덤웨이터가 운행됨

○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어스위치 접점의 복귀불량으로 오동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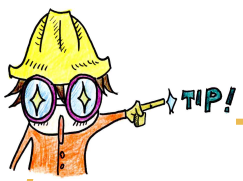


###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자체검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와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자체점검 실시
○ 1일 1회 급식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승강기 비상시 행동요령 미준수

## 무슨일이 있었나요?

**고장 난 승강기에서 카 도어를 열고 탈출을 시도하려다 추락한 사고**

1993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건의 사고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 정차하자 갇혀 있던 승객이 육성으로 구조를 요청하면서 카도어를 연 후 승강장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장문 틈새에 빠져 피트에 추락함.(중상 1명, 사망 4명)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119전화 및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비상시 조치사항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가 혼자 탑승하였음
○ 착상레벨을 이탈하여 정지한 승강기에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함
○ 관리자가 고장 후 갇혀있던 승객에게 비상연락 장치로 행동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음.

(잘라서 활용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어린이는 가급적 보호자가 동반하여 고장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 이용자는 고장이나 정전 등으로 카내에 갇힐 경우 비상버튼을 눌러 연락 장치로 구조 요청
○ 관리자는 비상시 비상연락망을 가동시키고, 카내에 갇힌 승객에게는 비상연락처(인터폰 등)를 이용하여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줌

# 승강기 이용수칙 미준수 및 시설 결함

## 무슨일이 있었나요?

**승강기 내에서 천장 조명루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건의 사고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어린이 이용자가 승강기 내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승강기 내부 천장 조명 루버를 이탈시킴. 천장 조명 루버가 일부 이탈된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천장 조명 루버가 낙하하여 탑승객을 덮침(중상 1명, 경상 5명)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승강기 관리업체, 119전화 및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가 카 천장 루버를 이탈시킴으로 발생

○ 제조결함에 의한 사고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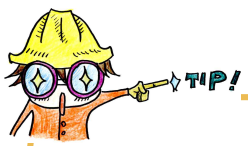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카 내에 이용자 준수사항 부착 및 안전교육 지도**

○ **루버가 쉽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일상점검 시 시설 탈부착 여부 확인**

# 승강기 이용수칙 미준수

## 무슨일이 있었나요?

**승강장 문을 차거나 충돌하여 승강장 문 가이드 슈가 이탈되어 추락한 사고**

199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0건의 사고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판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피해자와 동료 1명이 만취한 상태에서 2층 승강장 문을 발로 차고 승강장 문에 기대는 순간 승강장 문 가이드 슈가 문턱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가 피트로 추락함.(중상 12명, 사망10, 경상 1명)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승강기관리업체, 119전화 및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승강기 이용자가 승강기 출입문을 흔들거나 기대지 말아야 하는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음

○ 학생들이 승강장에서 장난을 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잘라서 활용하세요~)

TIP!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승강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와 관련된 이용자 안전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

○ "이용자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

# 승강기 이용수칙 미준수

## 무슨일이 있었나요?

**탑승 중 승강장 문에 충돌하여 전도되는 사고**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0건의 사고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피해자가 승강장 문이 닫히던 중 승강기에 탑승하려 하다 승강장 문에 충돌한 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중상 10명)

##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고 즉시 승강기 관리업체, 119전화 및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신체반응이 느린 노약자가 승강장 문이 닫히는 승강기에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함

○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

---------- (잘라서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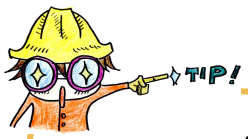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승강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와 관련된 이용자 안전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

○ 닫히는 문에 무리한 탑승을 시도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전기 안전나침반


| | | | |
|---|---|---|---|
| 3년 주기 | 전기설비 정기검사 | …… | 54-55 |
| 매월 | 전기설비 정기점검 | …… | 56 |
| 수시 | 전기안전관리 교직원 교육자료 | …… | 57 |
| | 전기시설 안전관리 주의사항 | …… | 58 |
| 안전사고사례 | 전기합선 및 누전 화재 | …… | 59 |
| | 개인전열기구 사용 화재 | …… | 60 |
| | 전기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 | …… |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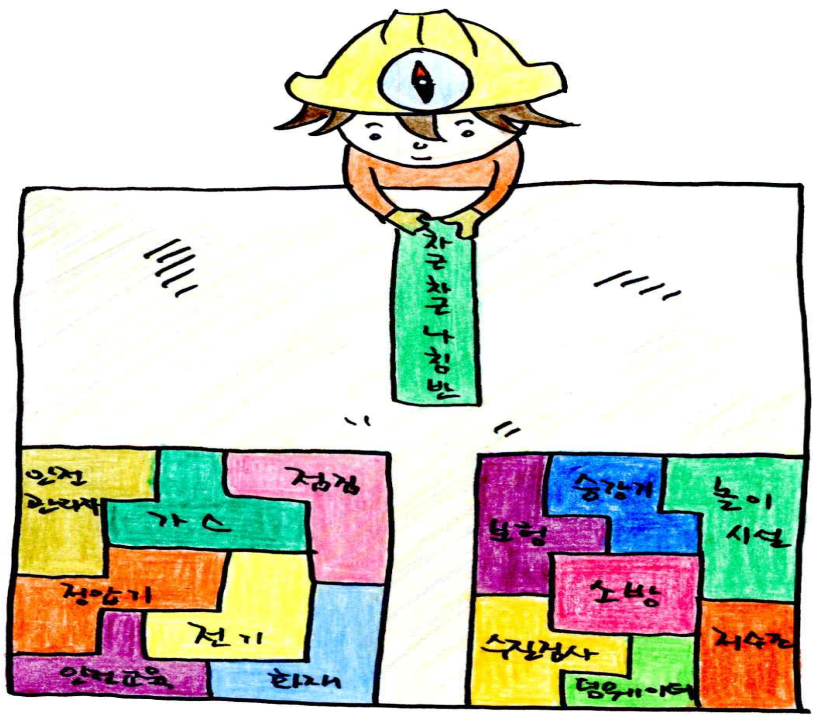

# 3년 주기 전기설비 정기검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전기설비 정기검사"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3년 주기 | 외관검사, 접지저항 측정검사, 절연저항 측정검사, 절연내력 시험검사, 절연유시험 및 측정, 보호장치 시험검사, 계측장치 설치상태 검사, 제어회로 동작 및 기기조작 시험,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검사(직전검사일 기준 전후 2개월 이내실시) |

◦ 고압이 아닌 유치원은 1년에 1회, 고압이 아닌 초·중등학교는 2년에 1회 (2015년 6월 기준 고압 - 용량 100KW이상, 향후 고압기준 변경가능성 있음)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전기사업법 제65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 꼭 확인하세요

☆ 작업 전

◦ 학교에서 전기설비안전관리위탁업체 직원과 사전협의

◦ 인입전선로의 검사를 위해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을 한국전력공사와 사전협의

◦ 검사 시 정전(약 30분정도)이 수반되므로 인터넷통신, 엘리베이터, 전산 및 통신 장비 등의 유지보수 업체에 사전 협의

☆ 작업 후

◦ 검사 완료 후 인터넷통신, 엘리베이터, 전산 및 통신 장비 등의 이상유무 확인

☆ 작업 중 안전 위해 요인 체크☑

◦ 전기장치 전원 차단,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 3년 주기 전기설비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0.5.>

##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 | | | |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안전한 | 전화번호 | 031)800-0000 |
| | 회사명 또는 상호 | 안전초등학교 | 사업자등록번호 | 127-83-000000 |
| | 주소 | 경기도 안전시 안전길 00 | | |

| | |
|---|---|
| 전기설비설치장소 | 안전초 본관 급식소 옆 변전실 |
| 전 기 설 비 개 요 | 650㎾(계약전력) 수배전설비 |
| 검사희망연월일 | 2016.0.00. |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위와 같이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2016년 0월 00일

신청인 안전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귀하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검사 | → | 결정 | → | 검사결과 통보 |
|---|---|---|---|---|---|---|---|---|---|---|
| 신청인 | | | | | |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매월

# 전기설비 정기점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전기설비 정기점검"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매월 (용량에 따라 1~6회) |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저항 및 그 밖의 항목 점검 |

| 전기설비 규모 | 300kw이하 | 500kw이하 | 700kw이하 | 1,500kw이하 | 2,000kw이하 | 2,500kw이하 |
|---|---|---|---|---|---|---|
| 점검 횟수 | 월 1회 이상 | 월 2회 이상 | 월 3회 이상 | 월 4회 이상 | 월 5회 이상 | 월 6회 이상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전기사업법 제66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41조,제44조2항 별표13



## 꼭 확인하세요

◦ 전기설비안전관리위탁업체 직원 정기 점검

☆ 작업 전

◦ 응급처치방법 및 작업 중의 정리, 설비 및 기계의 안전 확인

◦ 전원계통이 돌아서 살아올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종 전원 스위치 차단

☆ 작업 후

◦ 고압반 및 배전반 내에 작업자 유무 확인

◦ 점검을 위하여 풀었던 볼트·너트 등의 조임 여부 확인

☆ 일상점검 체크☑

◦ 일상순시 점검은 이상한 소리, 냄새, 손상 등을 점검

수시

# 전기 안전관리 교직원 교육자료

## 《 전기 안전관리 》

### 1. 젖은 손은 감전의 우려가 큽니다.

- 전기는 물기가 있을 때에 더욱 잘 통하게 되므로 젖은 손으로는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2.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한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쓰면 한꺼번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3.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 뽑을 때에는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합니다.

-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지 않으면 접촉불량으로 과열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 코드를 뽑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지 전선을 잡아 당기면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 4. 불량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 불량전기제품을 사용하면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해 감전, 화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자 또는 "KS"표시품 사용)

### 5. 세탁기 등 습기가 많은 창고의 전기기구는 반드시 접지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구 외함 등을 통해 전류가 누설될 경우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접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를 구입·사용해야 합니다.

### 6. 전기안전 수칙을 알아봅니다.

- 전기기구 외함 등을 통해 전류가 누설될 경우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련 각종 교육자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www.kesco.or.kr)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수시

# 전기 시설 안전관리 주의사항

## 1.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기는 물과 전기가 접촉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월 1회 동작시험을 해야 합니다.

## 2. 전구

- 전등설비에 적정한 와트량이 사용되었는지 모든 전구를 확인해야 하며, 적정 와트량보다 높은 전구는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적정한 와트량을 모를 경우에는 제조회사에 확인하고, 헐겁게 끼워진 전구는 과열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끼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물과 전기는 상극

- 전기기구를 싱크대, 욕조와 같이 물이 있는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하며, 물 근처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빼두어야 합니다.
- 전기기구가 물에 젖었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고 전문 수리공의 점검을 받기 전까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4. 오락·컴퓨터 설비

- 설비가 좋은 상태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선, 플러그, 코드, 접속기구에 갈라짐이나 손상이 없는지)

## 5. 차단기·퓨즈

- 차단기와 퓨즈는 회로에 맞게 적정규격이어야 합니다. 만약 적정규격을 모를 경우에는 전기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규격표시를 합시다
- 적정규격 외에는 어떠한 것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6. 플러그

- 각 콘센트에 적합한 타입의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 방에서 2구 콘센트에 3핀 플러그를 사용하게 될 때 접지 핀을 플러그로부터 분리 하면 안 됩니다. (전기적 충격 위험 우려)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2핀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재나 감전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플러그가 콘센트에 잘 맞지 않을 때 억지로 끼우면 안됩니다. 플러그는 콘센트에 안전하게 삽입 되어야 하고 콘센트는 과부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7. 콘센트

- 콘센트에 플러그가 헐겁게 끼워져 있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된 것은 바꾸고, 쓰지 않는 콘센트는 아이들이 손댈 수 없도록 커버를 해야 합니다.

# 전기합선 및 누전으로 인한 화재

##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고 변전실 화재 (성남)**

2015.01.12.(월) 10:30경 변전실 내 변압기간 연결 케이블 열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발생 즉시 진화하여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자칫 변압기 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고 기술실 합선 화재 (안산)**

2015.03.24.(화) 20:30분경 4층 기술실의 미니오디어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1천5백여만원의 재산 피해 발생,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즉시 자체 진화하여 큰 화재로의 확산은 막았으나, 저녁시간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음.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 신고 후, 화재 진화 실시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전기 합선이나 누전은 원인불명이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가 많음. 전기제품의 경우 퇴실시 전기 콘센트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먼지가 쌓이면서 스파크로 인한 화재 등)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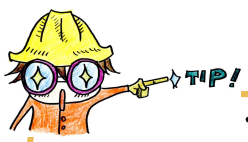


###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퇴실시 전기제품 전원을 차단(코드 제거)을 반드시 확인 강조
○ 매월 전기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조치이행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커버 설치

# 개인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 무슨일이 있었나요?

**○○초 전기방석 사용으로 인한 교실 화재 (수원)**

2014.12.11.(목) 20:14경 교실에서 개인 전열기구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퇴근후 개인 전기방석이 가열되면서 교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교실1실 전소 및 복도부 천장 그을음이 생겨, 1천6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5학년 5개반이 특별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불편 초래,

**○○고 개인 전기스토브 사용으로 인한 특별실 화재 (부천)**

2015.01.14.(수) 13:25경 별동 특별교실에서 사용하던 개인 전기스토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량철골조 특별실 별동 내부 및 물품피해가 발생 9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두 사고, 모두 개인 전열기구(난로, 선풍기 등)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용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임.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 신고 후, 화재 진화 실시

##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 개인 전열기구(난로, 선풍기 등) 사용 금지를 준수하지 않고 사용. 부득이 사용하더라도 전원차단 및 사용에 주의를 하여야 하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 (잘라서 활용하세요~)

TIP!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개인 전열기구(난로, 선풍기 등) 사용 금지 철저 이행
○ 전열기구 사용 후 반드시 전원 차단(코드 제거) 여부 확인 습관 강조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매 회의, 교육 시 마다 개인 전열기구 사용 및 전원차단에 대한 안내 강조

# 전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

##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학생이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작동이 안 되는 선풍기를 전기코드에 연결하다가 감전사고 발생

## 어떻게 처리했나요?

학생들을 전기선 주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학생이 전기장치를 임의대로 만지지 않도록 안전교육

○ 오작동 전기장치의 학생접근 방치

---------- (잘라서 활용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전기 위험성등, 안전사고 사례 교육 및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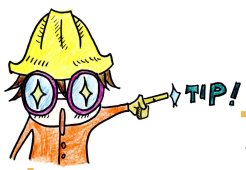


**실장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콘센트 및 다발로 연결된 콘센트 접속으로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복잡하게 연결된 전기선이 있는지 확인

○ 실·내외 전기함·전기실은 학생들이 임의 개폐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설치 외부 접촉에 의한 감전에 대비토록 관리

# 소방 안전나침반


| | | | |
|---|---|---|---|
| 매년/인사이동시 | 소방계획 | ····· | 63 |
| 연 2회 | 소방훈련 교육 실시 | ····· | 64-65 |
| 연 1회 | 소방 법정 점검 | ····· | 66 |
| 월 1회 | 소방 일상 점검 | ····· | 67 |
| 상시 | 수신기 단계별 작동방법 | ····· | 68-69 |
| | 화재감지기 관리 | ····· | 70 |
| | 옥내외 소화전 관리 | ····· | 71 |
| | 소화기 관리 | ····· | 72 |
| 사안발생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예시 | ····· | 73 |
| | 화재발생시 보고체계 | ····· | 74-86 |
| 안전사고사례 | 공사중 부주의, 폐휴지 적재, 급식조리실 부주의, 담뱃불 부주의, 과학실험 부주의 등 화재 | ····· | 87-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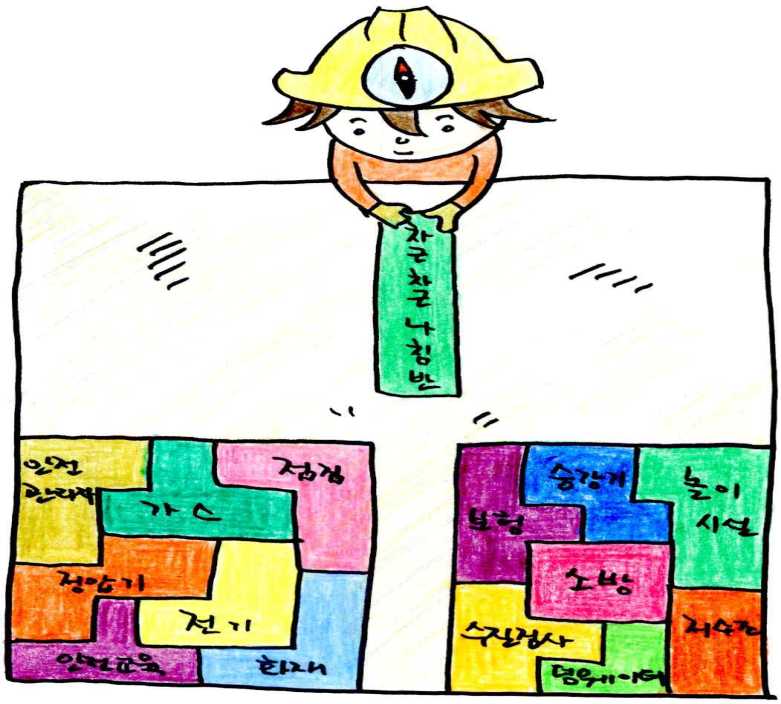

매년/인사이동시

# 소 방 계 획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소방계획" 나침반

| 시 기 | 내 용 |
|---|---|
| 12월<br>인사이동시 | 익년도 소방계획서 작성·제출 (인사이동시 수정, 내부결재)<br>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인사이동 후 30일내) 및 관할 소방서 신고(선임 후 14일내), 2015.1.1.부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함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1조, 제24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 꼭 확인하세요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위반시 조치사항

| 위반사항 | 처벌내용 | 관련법 | 비고 |
|---|---|---|---|
|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경우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법률 제49조 제4호 | |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 법률 제50조 제5호 | |
|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률 제53조 제1항 | |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경우 | | | |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1회 이상 소방서와 합동훈련 실시) | | | |
|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 동 법률 규칙 제40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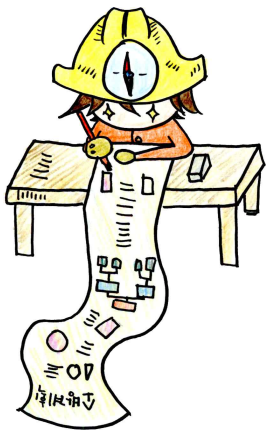

연2회

# 소방훈련 교육 실시

[별지9]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연월일 : 201○. ○. ○. (수) 13:00~13:50

| | | | | |
|---|---|---|---|---|
| 소방대상물 | 기관명 | 안전초등학교 | 소방안전관리 등급 | ☑ 공공, ☐ 특급<br>☐ 1급, ☐ 2급 |
| |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번길 ○○○ | | |
| | 구조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534.08 ㎡, 바닥면적 2,572 ㎡ | | |
| 관계인 | 기관 또는 법인명(성명) | 안전초등학교 | | |
| | 주소 | 경기도 ○○시 ○○로 ○○○번길 ○○○ | | |
| 소방안전관리자 | 성명 | 안전희 | 선임일자 | 2015.07.01. |
| | 직위 | 행정실장 | 자격구분 | ☑ 공공, ☐ 특급<br>☐ 1급, ☐ 2급 |

| | | | |
|---|---|---|---|
| 훈련·교육일시 | 201○. ○. ○. (수) 13:00~13:50 | 교육구분 | ☐ 자체교육<br>☑ 그 밖의 교육 |
| 교육·훈련 구분 | ☐ 자체훈련 ☑ 합동훈련 | 교육구분 | ☐ 자체교육<br>☑ 그 밖의 교육 |
| 훈련통제관 | ○○소방서 ○○○(서명또는인) | 교관 | ○○소방서 ○○○ (서명또는인) |
| 교육교관 | ○○119안전센터 ○○○ | | |

훈련·교육 실시사항

○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화재대피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재 발신기 작동과 동시에 11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주제인 우리학교 비상구 찾기 체험을 통하여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장소로 대피.

○ 김상열 센터장의 강의 실시 (한가정 소화기 비치, 화재 시 행동 요령 강의)

○ 소방관의 소화기 사용법 시연 및 소화기 사용법 실습(6학년 학생 7명 참여)

○ 출동한 소방차의 방수 진입장면 시연

총평

○ 전교생 1,390명이 비상벨 작동과 동시에 7분 이내 대피요령을 준수하여 정해진 피난용 비상구를 통해 계획된 장소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를 완료하였으며, 교육강사의 시연시 1~4학년 학생들의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우수하였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단위의 실내 교육 권장-○○○센터장)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며 훈련 종료시까지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였음.

※ 훈련통제관: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 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 훈련·교육 실시 사항: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2회

# 소방훈련 교육 실시

| 하반기 소방훈련_화재대피 (201◯.◯.◯.13:00~13:50) | | |
|---|---|---|
|  |  |  |
|  |  | |
|  |  | |

**꼭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실시 후 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1회

# 소 방 법 정 점 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소방법정점검" 나침반

| 내 용 | 시 기 |
|---|---|
|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br>(단 학교는 사용승인일이 1~6월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째 달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꼭 확인하세요

◦ 월별 기타 체크사항

| 월 | 체크사항 |
|---|---|
| 3월 | · 교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소방계획서 보완 |
| 6, 7월 | · 방학기간 유휴실 등에 대한 전원차단 및 관리상태 점검<br>· 습기가 많은 계절적 특성이 있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전자기기의 개별 전원 차단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퇴근 |
| 12월 | · 방학기간 유휴실 등에 대한 전원차단 및 관리상태 점검<br>· 차 년도 소방계획서 작성 |

월1회

# 소방일상점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소방일상점검" 아침반

| 내 용 | 시 기 |
|---|---|
| **자체점검** | 월1회(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미실시 가능)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꼭 확인하세요

◦ 일상점검대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점검, 소화기 상태, 소화전함의 관리상태, 화재수신기의 작동점검 등

◦ 소화기 권장 사용연수는 8년(폐기대상 소화기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면 무료수거), 폐기대상 소화기를 충전해서 재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이 구입비용과 비슷하므로 새로 구입하는 것을 소방서에서는 권장

◦ 소방 경보벨이 울렸을 때 대처순서

화재수신기를 확인하여 벨이 울린 장소를 찾는다 → 벨이 울린 장소를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119신고 또는 화재진화)를 취하고 오인으로 인한 경보벨이 작동할 때에는 화재수신기의 지구경종, 주경종 버튼을 눌러 경보벨을 멈춘다.

◦ 화재시 소방 경보벨이 울리지 않았을 경우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화전의 발신기 버튼을 눌러 소방 경보벨을 작동시키고 건물 내부의 인원이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 화재를 진압한다.

상시

# 수신기 단계별 작동방법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수신기 단계별 작동방법" 나침반

| | |
|---|---|
| 수 신 기 | <br>**수신기** – 화재 발생시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수신하여 건물의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장치<br>**주 경종** – 건물 전체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알람벨<br>**지구 경종** – 층별 또는 구역에 발생한 화재를 알려주는 알람벨<br> |

### 새내기도 쉽게 따라하는 화재 경보벨 작동시 대처방법 !

| | |
|---|---|
| 1. 수신기 상태등 확인 | 당직실에 설치된 수신기의 상태등 중 어느 곳에 점등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br> |
| 2. 화재여부 확인 | 점등된 구역의 실제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해 화재시 소화기나 소화전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상시

# 수신기 단계별 작동방법

| | |
|---|---|
| 3. 화재가 아니라면 | 수신기의 주경종, 지구경종 버튼을 눌러 화재경보를 꺼줍니다.<br> |
| 4. 원인제거 | 먼지 등 기타원인으로 인한 감지기 작동시 원인제거 후 동작 표시등, 발신기 표시등이 불이 꺼짐을 확인합니다. |
| 5. 수신기 복구 | 복구 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정상으로 전환해줍니다.<br> |
| 6. 음향장치 복구 | 3번에서 일시 정지시킨 주경종, 지구경종 버튼을 눌러 정상(연동)으로 전환 해줍니다.<br>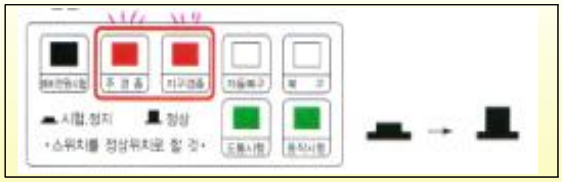 |
| 7. 스위치 주의등 확인 | 마지막으로 스위치 주의등이 꺼졌는지 확인합니다.<br><br><그림 출처 : 소방안전협회 실무교육 책자> |

**꼭 확인하세요**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반드시 점등구역의 화재 여부를 꼭 확인 후 수신기를 복구하세요.

상시

# 화재감지기 관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화재감지기 관리" 나침반

| | |
|---|---|
| 화재감지기 |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

## 동작 방식에 따른 설치 장소

| 구 분 | 동 작 방 식 | 설 치 장 소 |
|---|---|---|
| 차동식 열감지기  | 주위의 온도가 일정상승율 이상일 때 동작 | 사무실, 거실 |
| 정온식 열감지기  | 주위 환경이 미리 정해진 온도에 도달할 때 동작 | 주방, 보일러실 |
| 연기 감지기  | 연기 입자에 의한 감지기 내부의 전류 변화에 따라 동작 | 복도, 계단, 경사로 |
| 복합형 감지기  <사진 출처 : 소방안전협회 실무교육 책자> | 열 또는 연기감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작 | 오동작 우려가 큰 장소 |

## 꼭 확인하세요

화재 감지기는 공기 중 분진, 습기, 기류의 방향 등에 오작동 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먼지를 자주 제거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시

# 옥내·외 소화전 관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옥내 · 외 소화전 관리" 나침반

| 구 분 | 작 동 방 법 | 설 치 장 소 |
|---|---|---|
| **옥외 소화전**<br> | 건물 1,2층 및 인접건물 연소 방지.<br>소방차의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 |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분에 설치 |
| **옥내 소화전**<br>  | 1.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꺼낸다.<br>2.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다.<br>3. 두손으로 관창(노즐)을 꼭 잡고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하여 불을 끈다.<br>4. 화재 진화 후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완전히 말린 후 차곡차곡 접어 보관한다. |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전층 |
| **스프링클러**<br>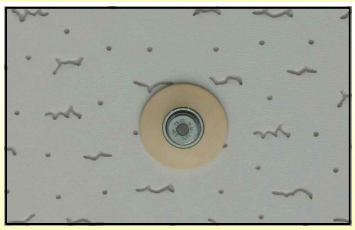<br>천장에 설치된 헤드 | 천장면에 부착되어있는 헤드의 감열부분이 용융 또는 파괴되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어 소화를 이루게 하는 자동소화설비. | 건축물의 연면적 5,000㎡이상 전층 (교육연구시설은 4층이상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1,3층은 제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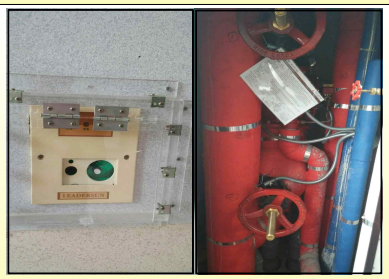<br>수동조작함 및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밸브 | 화재시 스프링클러는 자동으로 동작하지만, 미동작시 수동조작함의 버튼을 눌러서 헤드를 개방해야 함.<br>(오작동시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펌프를 정지시키고 밸브를 잠근 후 퇴수 처리) | |

## 꼭 확인하세요

저수조 청소시 소방용수를 배출하면 저수위 경보벨이 작동할 수 있으므로 경보벨을 정지 시키는 등 선조치 후 작업하도록 하세요.

상시

# 소화기 관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소화기 관리" 나침반

| 구 분 | 작 동 방 법 | 설 치 장 소 |
|---|---|---|
| 분말 소화기  | ABC급(보통,유류,전기)화재에 사용<br>1. 안전핀을 뽑는다<br>2. 호스의 끝을 바람을 등지고 화재 방향으로 향한다<br>3. 손잡이를 힘껏 잡아 눌러 비로 쓸 듯이 화재를 진압한다. | 33㎡ 이상 구획된 실마다 1대 설치.<br>교실, 복도 등 |
| 할론 소화기  | ABC급(보통,유류,전기)화재에 사용<br>장점 : 사용 후 흔적이 없고, 방출 시 물체에 전혀 손상이 없음.<br>단점 : 가격이 비싸고, 오존층 파괴 (최근 생산 및 판매가 금지 됨) | 도서관, 문서고 |
| 이산화탄소 소화기  | ABC급(보통,유류,전기)화재에 사용<br>물을 사용하면 안되는 화재에 효과적이며 냉각 및 질식 효과가 매우 높음. | 도서관, 문서고 |
| 투척용(액상) 소화기  | 화재시 화점에 던지면 유리병이 깨지면서 약제가 분사되어 화재를 진압. | 유치원,<br>장애인 시설,<br>요양보호시설 |
| 자동확산 소화용구  | ABC급(보통,유류,전기)화재에 사용<br>열감지 장치가 있어 일정온도 도달시 자동으로 작동 | 보일러실,<br>급식실,<br>주방의 천정 |

## 꼭 확인하세요

| | | | |
|---|---|---|---|
| 소화기 지시압력계  | 황색 | 가스 충전 필요 | 약제가 굳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흔들어 관리 요망. |
| | 녹색 | 정상 | |
| | 적색 | 과압상태, 사용금지 | |



사안발생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예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9.>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상호(성명) 안전초등학교 (용도구분 : 교육용) | 등급 ☑ 공공 [ ] 특급 [ ] 1급 [ ] 2급 | |
| | 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전화: 031-840-○○○○ ) | | |
| | 구 조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094㎡, 바닥면적 2,387㎡ | | |

| | | | | |
|---|---|---|---|---|
| 소방안전관리자 | 선임 | 성명 안전희 | 생년월일 1971.12.25. | 성별 여 |
| | |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이메일 주소 : ○○○@hanmail.net) (전화: 031-840-○○○○) | | |
| | | 직위 행정실장 | 선임일자 2015.07.01. | |
| | | 경력 20년 (총선임기간 : 15년) | 최종교육일자 2014. 10.30. | |
| | 해임 | 성명 안전해 | 생년월일 1972.11.24. | 성별 남 |
| | |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전화:031-840-○○○○ ) | | |
| | | 해임일자 2015.06.30. | 해임사유 2015.07.01.자 인사이동으로 전출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2015년 07 월 01 일

신고인 안전초등학교 안전한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br>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br>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br>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br>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안전초등학교장 안전한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재난상황 보고 요령

자연재난(풍수해 · 설해 · 한파 · 지진), 화재, 승강기 사고 발생시

최초 사고발생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동시 유선보고

유 · 초 · 중 · 고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방재담당/당직실) ➡ 경기도교육청 주간: 재난예방과 야간: 당직실

직속기관

평일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재난예방과 방재재난관리담당 820-0727~8(Fax 820-0749)

야간 · 공휴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당직실 820 - 0514, 0524 유선 보고

## 보고 시기 및 방법(3단계 보고)

| 구 분 | 보 고 시 기 | 보 고 사 항 | 보 고 방 법 |
|---|---|---|---|
| ① 발생보고 | • 풍수해·설해·지진,화재,승강기 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파악 즉시 | • 재난상황보고서 내용 【서식: 별지 1호】<br>※ 화재발생보고 【별지 2호】<br>※ 승강기사고보고 【별지 3호】 | • 담당자에게 유선보고<br>※ 문자송신 병행 |
| | •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1일 2회) 보고<br>- 09:00 기준 10:00 까지<br>- 20:00 기준 21:00 까지 | • 재난상황보고서 【서식: 별지 1호】 학교현황, 사진 첨부 | • 담당자에게 메일보고<br>• 공문시행 |
| | • 재해 피해액이 3천, 복구소요액이 5천인 경우, 도·시 재해대책본부 재해통보 | • 도,시· 군 재해대책본부 통보 【서식: 별지 4호】 | • 공문시행 |
| ② 복구진행 | • 피해복구 추진사항보고 (피해발생후 5일 이내) | • 재해복구경과 보고서 【서식: 별지 5호】 | •담당자메일보고 |
| ③ 복구결과 보고 | • 복구 완료후 5일 이내 | • 재해복구결과 보고서 【서식: 별지 6호】 | • 공문시행 |

*경기도 교육청 학교재난실무행동매뉴얼 참조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재난피해 발생보고 및 복구지원 체계

| | | |
|---|---|---|
| 1. 재난피해 발생 | 피해기관 및 교육지원청 | ① 피해기관(유·초·중·고·특수·직기)<br>⇒ 피해현황 파악 및 초기 복구 및 방재 조치 실시<br>⇒ 최초 사고발생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동시보고<br>⇒ 학생 안전보호조치<br>② 교육지원청<br>⇒ 도교육청에 피해상황 즉시 보고<br>⇒ 재난담당자 피해기관 현장점검하여 피해상황 확인<br>(교육시설담당: 피해액 산출 협조지원) |
| 2. 피해상황 보고 | 교육지원청 | ① 피해학교에 비상조치 지시<br>② 피해상황 신속하게 파악 재난상황보고<br>(재난상황발생,재해복구경과,복구결과 3단계 보고)<br>③ 재해·재난발생 비상근무 실시 및 시설비, 예비비 등을 활용한 긴급 복구 |
| | 도교육청 (재난예방과) | ① 피해개요를 안전책임관에게 보고<br>⇒ 장기적인 피해가 클 때에는 피해 물량만 우선 보고<br>② 피해 상황 및 지원 상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전파<br>③ 피해 심각 지역 및 피해현황 분석,보고 |
| |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학교재해복구비 신청서 제출<br>(전화: 02-781-0196, 팩스: 02-781-0196, 전자우편: sos5@edufa.or.kr)<br>- 유·초·중·교육지원청 재해 : 교육지원청에서 공제회에 신청서 제출<br>- 고·특교·직기·도교육청 재해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신청서 제출<br>- 사립 각급학교 : 학교에서 직접 공제회에 신청서 제출 | |
| 3. 피해복구 협조 | 교육지원청 | ①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복구 불가능한 사항은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 및 협조 요청(예산, 인력 및 시설지원 등)<br>② 피해복구 추진 상황 보고 ⇒ 도교육청 재난예방과 |
| | 도교육청 | ① 교육시설 피해 상황, 재난복구 담당부서에 통지 |
| 4. 피해복구 지원 | 도교육청 | ① 피해복구추진반 구성·운영<br>② 피해현황 및 복구 소요예산 파악<br>③ 피해복구비 지원대책 마련<br>④ 피해복구비(예비비) 사용 협조 요청<br>⇒ 예산담당부서<br>⑤ 피해복구비(예비비) 집행지침 마련<br>⑥ 피해복구비(예비비) 지원 |
| | 도교육청 | ① 피해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확인<br>② 피해발생 교육시설·재산의 피해액·복구소요액 산출<br>③ 피해발생 현장 응급 조치, 복구지원 및 점검 |
| | 도교육청 | ① 피해발생 교육기관의 정상 운영대책 수립·시행(학생 수업 등)<br>② 각급학교 학생수업 결손에 따른 응급수업대책 마련 지시 및 확인<br>③ 인명피해 발생 시 사후대책 수립·시행 |
| 5. 피해복구 완료 | 피해학교 | ① 학교시설물 피해 복구<br>② 학생수업 정상화 |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재 난 상 황 보 고 [2]

기관명 : 안전초등학교 (○○시) 보고일 : 201○.○.○.
작성자 : 소속) 안전초등학교 직) 행정실장 성명) 안전희
☏ 학교 행정실 840-○○○○, h·p 010-000-0000
최초보고사항[3] : 201○.○.○. (요일) 00:00
○직 ○○○가 교육지원청 ○부서 ○○○에게 유선보고

Ⅰ. 재해개요[4]
1. 재해원인 :
2. 재해기간(발생일시) :
3. 재해지역(장소) :
4. 강우(강설)량 또는 지진강도 :
5. 참고사항(특이사항) :

Ⅱ. 피해 상황 : 총 교(유 ,초 ,중 ,고 ,특수 ,직속기관 )
1. 인명 피해 및 인적사항[5]

| 구분 | 지역 | 학교명 | 학년반 | 성명 | 직접적 피해일시 | | 응급조치 사 항 | 비고 |
|---|---|---|---|---|---|---|---|---|
| | | | | | 발생일시 | 피해원인 | | |
| | | | | | | | | |

2. 시설·물품 피해현황

(단위:천원)

| 지역별 | 학교명 | 학교급 (설립별) | 피 해 내 용 | | | | | | 직접적 피해일시 | | 복구대책 | |
|---|---|---|---|---|---|---|---|---|---|---|---|---|
| | | | 피해 정도 | 시설명 (물품명) | 구조 | 건축년도 (구입년도) | 피해 물량 | 피해액 | 발생 일시 | 피해 원인 | 복 구 소요액 | 복구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

2) '중요재난 상황보고기준'에 의거,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보고'후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정부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중요재난 상황보고기준외에,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교육청 즉시보고**
3) 학교의 교육지원청 최초보고사항 기재. 사고발생후 즉시보고하지 않은 경우, 간단명료하게 사유 기재
4) 재해원인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명을 기입, 강수(강설)량은 보고일 현재량, 지역명은 시(군)
5) 인명피해의 피해구분은 부상,실종,사망 등으로 분류
(인명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직원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직급 생년월일, 성별, 기·미혼 여부 등 인적사항 병기)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3. 기타피해

Ⅲ. 피해복구 시까지 수업대책

–

Ⅳ. 학교 임시휴업 및 휴교현황

| 지역별 | 학교명 | 학교 현황 | | | | 휴업또는 휴교기간 | 휴업또는 휴교사유 | 비고 |
|---|---|---|---|---|---|---|---|---|
| | | 학급수 | 학생수 | 교원수 | 직원수 | | | |
| | | | | | | | | |

Ⅴ. 기관(학교)별 이재민 수용상황

| 지역별 | 수용 학교 | 수용 일시 | 수용시설 | | 수용사항 | | | | 수용학교의 수업대책 | 비 고 |
|---|---|---|---|---|---|---|---|---|---|---|
| | | | 시설명 | 실 수 | 수용 예정기간 | 수용 세대주 | 수용 인원 | 수용 이유 | | |
| | | | | | | | | | | |

Ⅵ. 학교 주요조치사항[6)]

–

Ⅶ. 교육지원청 주요조치사항[7)]

–

Ⅷ. 향후대책(복구계획)

–

※ 참고자료(학교 일반현황)

– 소재지(주소) :

| 설립 구분 | 개교 년월일 | 교장 | 행정실장 (직급,성명) | 학급수 (학급) | 학생수 (명) | 교원수 (명) | 직원수 (명) | 비고 |
|---|---|---|---|---|---|---|---|---|
| | | | | | | | | |

– 시설 현황

| 보통교실 | 특별교실 | 관리실 | 창고 | 화장실 | | | 비고 |
|---|---|---|---|---|---|---|---|
| | | | | | | | |

– 기타 현황

붙임 : 1. 피해현장 사진 각1부.
2. 학교 위치도 및 건물배치도[8)] 1부.

6) 학교 주요조치사항에 '학생 및 교직원 대피'사항, 응급조치사항, 유관기관 신고사항 등 기재
7) 교육지원청 주요조치사항에 학교점검사항 및 피해복구 관련 조치사항 등 기재, 해당재난관련 언론보도여부 확인
8) 피해시설 '건물배치도'에 적색으로 표기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붙임1 피해현황 사진(예시)

| <OO초 후면 외벽 드라이비트 탈락> | |
|---|---|
| | |
| 별관동 옆면 외벽 드라이비트 탈락 | 별관동 옆면 외벽 드라이비트 탈락 |
| | |
| | |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붙임2 학교 위치도 및 배치도(예시)

## □ 위치도

| 안전초등학교 | 경기도 ○○시 ○○로 ○○ 번길 |
|---|---|
| 지도 첨부 | |

| <건물배치도> |
|---|
| 건물배치도 첨부 |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화 재 발 생 상 황 보 고

기관명 : 안전초등학교 (○○시) 보고일 : 201○.○.○.
작성자 : 소속) 안전초등학교 직) 행정실장 성명) 안전희
☏ 학교 행정실 840-○○○○, h·p 010-000-0000
최초보고사항[9] : 201○.○.○. (요일) 00:00
○직 ○○○가 교육지원청 ○부서 ○○○에게 유선보고

Ⅰ. 화재발생개요
1. 발생장소 :
2. 발생일시 및 최초발견자 :
3. 소방서 신고 :
4. 화재진화
- 소방관, 차량 출동 : 20 . . .( ) 00:00경 (소방차량 대)
- 진화일시 : 20 . . .( ) 00:00경
5. 발생 원인 :
6. 기타 특이사항[10] :

Ⅱ. 피해 상황[11] : 총 교(유 ,초 ,중 ,고 ,특수 , 직속기관 )
1. 인명 피해 및 인적사항

| 구분 | 지역 | 학교명 | 학년반 | 성명 | 직접적 피해일시 | | 응급조치 사항 | 비고 |
|---|---|---|---|---|---|---|---|---|
| | | | | | 발생일시 | 피해원인 | | |
| | | | | | | | | |

2. 시설·물품 피해현황 (단위:천원)

| 지역별 | 학교명 | 학교급 (설립별) | 피 해 내 용 | | | | | | 직접적 피해일시 | | 복구대책 | |
|---|---|---|---|---|---|---|---|---|---|---|---|---|
| | | | 피해 정도 | 시설명 (물품명) | 구조 | 건축년도 (구입년도) | 피해 물량 | 피해액 | 발생 일시 | 피해 원인 | 복구 소요 액 | 복구 계획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9) 학교의 교육지원청 최초보고사항 기재. 사고발생후 즉시보고하지 않은 경우, 간단명료하게 사유 기재
10) 화재발생시, 언론보도 여부 필히 확인하여, 특이사항에 기재
11) '피해상황 등'은 【별지5】'자연재난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3. 기타피해

Ⅲ. 피해복구 시까지 수업대책

–

Ⅳ. 학교 임시휴업 및 휴교현황

| 지역별 | 학교명 | 학 교 현 황 | | | | 휴업또는 휴교기간 | 휴업또는 휴교사유 | 비고 |
|---|---|---|---|---|---|---|---|---|
| | | 학급수 | 학생수 | 교원수 | 직원수 | | | |
| | | | | | | | | |

Ⅴ. 기관(학교)별 이재민 수용상황

| 지역별 | 수용 학교 | 수용 일시 | 수용시설 | | 수용사항 | | | | 수용학교의 수업대책 | 비고 |
|---|---|---|---|---|---|---|---|---|---|---|
| | | | 시설명 | 실수 | 수용 예정기간 | 수용 세대주 | 수용 인원 | 수용 이유 | | |
| | | | | | | | | | | |

Ⅵ. 학교 주요조치사항

–

Ⅶ. 교육지원청 주요조치사항

–

Ⅷ. 향후대책(복구계획)

※ 참고자료(학교 일반현황)

– 소재지(주소) :

| 설립 구분 | 개교 년월일 | 교장 | 행정실장 (직급,성명) | 학급수 (학급) | 학생수 (명) | 교원수 (명) | 직원수 (명) | 비고 |
|---|---|---|---|---|---|---|---|---|
| | | | | | | | | |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시설 현황

| 보통교실 | 특별교실 | 관리실 | 창고 | 화장실 | | | 비고 |
|---|---|---|---|---|---|---|---|
| | | | | | | | |

– 기타 현황

붙임 : 1. 피해현장 사진 각1부.
2. 학교 위치도 및 건물배치도 1부.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재 난 상 황 통 보

| |
|---|
| 수　　신: 도,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접수일시:<br>시행일시:　　발　　신:　　(인)<br>제　　목: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기타(　　) |
| 1. 일　　시:<br>2. 장　　소:<br>3. 상황개요<br>4. 피해상황<br>○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br>※ 사망 실종자 인적사항<br>○ 재산피해:<br>○ 기　　타:<br>5. 응급조치사항<br>○ 조치사항<br>○ 동원사항<br>· 인력:　　명(군　　경　　소방　　공무원　　기타　　)<br>· 장비:　　대(　　)<br>6. 지원 및 협조사항 |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재 해 복 구 경 과 보 고 [12]

(기관명 : OO학교 )

Ⅰ. 재해개요

1. 재해원인 :
2. 재해기간(발생일시) :
3. 재해지역(장소) :
4. 강우(강설)량 또는 지진강도 :
5. 참고사항(특이사항) :

Ⅱ. 피해 상황

1. 인명 피해
2. 시설·물품 피해

(단위:천원)

| 지역별 | 학교명 | 학교급 (설립별) | 피 해 내 용 | | | | | | 직접적 피해일시 | | 복구대책 | |
|---|---|---|---|---|---|---|---|---|---|---|---|---|
| | | | 피해 정도 | 시설명 (물품명) | 구조 | 건축년도 (구입년도) | 피해 물량 | 피해액 | 발생 일시 | 피해 원인 | 복구 소요액 | 복구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Ⅲ. 재해복구 추진사항 (복구기간: 20 . . . ~ 20 . . . 일간)

1. 재해복구 완료된 사항

| 일 시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20 . . .( ) | ◦ | |
| 20 . . .( ) | ◦ | |

2. 향후 추진 계획

12) 재해발생후 5일이내에 피해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복구계획 수립후 「재해복구상황」 보고
※ 피해액, 복구소요액 정확히 산출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일 시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20 . . .( ) | ◦ | |
| 20 . . .( ) | ◦ | |

붙임 : 현장사진 1부.

사안발생시

## 화재 발생시 보고체계

# 재 해 복 구 결 과 보 고 [13]

(기관명 : OO학교 )

1. ○○월 ○○일 ○○:○○분경 ○○지역에 규모 ○.○의 ○○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복구 완료

2. 피해상황 : 기 보고자료 참고하여 작성

3. 재해복구 내용 (단위 : 천원)

| 복구비 집행 내역 | | | | 재원별 | | | |
|---|---|---|---|---|---|---|---|
| 사업명 | 물량 | 집행액 | 세부내역 | 재난 복구비 | 자체예산 | 교육청 지원 | 합계 |
| ○○공사 | 1식 | 5,000 | 교실바닥 교체 | 4,800 | 400 | 0 | 5,200 |
| ○○구입 | 5개 | 200 | | | | | |
| 합 계 | | 5,200 | | | | | |

4. 기타 사항

- 최종보고 이후 발생한 추가사항 기재

붙임: 현장사진(전,후) 1부.

13) 재해복구 완료후 5일이내에 「재해복구결과」 보고

# 공사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 무슨일이 있었나요?

**○○초 공사중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 발생 (안성)**

2015.02.15.(일) 12:47경 교실에서 안전난간공사 시행 중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천장텍스 및 교실, 비품피해 및 그을음 피해 발생

시공업체의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사전 초기 진압을 하였으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하여 8백5십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시공업체에서 복구공사 비용 전액 부담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 신고 후, 화재 진화 실시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공사업체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커텐 등 화재로 번질수 있는 요인이 많은 교실에서의 공사는 특히 주의해야 함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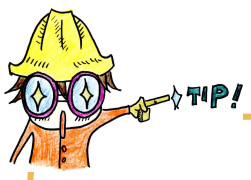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퇴실시 전기제품 전원을 차단(코드 제거)을 반드시 확인 강조

○ 매월 전기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바로 진행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방지

# 폐휴지 적재로 인한 화재

## 무슨일이 있었나요?

**○○중 학교내 폐목(잡목)을 적재 방치로 인한 화재 발생(양평)**

2015.03.25.(수) 13:40경 학교 서남측 구석에 나무 가지치기를 한 폐목(잡목)을 보관하던 중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체육교사가 발견하여 사전 진화 하였으나, 자칫 옆 교사동 건물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음. 학생들의 방화로 추정되며, 폐목 및 폐휴지등은 바로바로 처리하여 학교 내 오랜 기간 동안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 신고 후, 화재 진화 실시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가지치기 후 생긴 폐목(잡목) 및 폐휴지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적재하여, 학생들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학교에서는 폐품의 일괄처리를 위해 모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우선이며,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휴지 적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

----------(잘라서 활용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학교에서는 폐품의 일괄처리를 위해 모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하는게 우선이며,
○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휴지 적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급식조리실 부주의 화재

## 무슨일이 있었나요?

○○고 급식 조리실 화재 (남양주)

○○고 급식 조리실 화재 (안양)

2014.12.08.(월) 15:53경 급실 조리실에서 음식물 가열중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급식실 완전전소하여 4억3천여만원의 막대한 재산피해 발생,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조리사 등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 다행시 화재 발생시 시험기간으로 학생들이 없었으며, 화재일 이후, 겨울방학으로 급식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학기중 사고였으면 학생급식 문제로 교수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뻔 했음.
2015.05.14.(목) 07:40경 튀김솥 과열로 튀김솥, 후드닥트, 천정타일 그을음 피해 발생, 다행히 비교적 큰피해는 없었으나, 조리장이 약간의 화상물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학생등교시간 전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음. 일요일까지 복구완료하여 급식차질을 방지하였음.
두 사고 모두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가열사실을 잊고, 가스사용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음.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 신고 후, 화재 진화 실시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음식물 가열사실을 잊거나, 조리실 가스사용 부주의, 튀김기름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잘라서 활용하세요~)

TIP!

###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급식실 조리실무사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화재예방 솔선수범 강조
○ 특히, 가열기구나 가스를 사용하는 급식 조리실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분들이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여, 학생의 안전과 더불어 전체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식 강조

# 교내 담뱃불 등 부주의 화재 안전(1)

## 무슨일이 있었나요?

**○○유치원 교사동 뒤편 실외기 화재 (가평)**

2015.05.08.(금) 07:39경 교사동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설치된 실외기 2대 전소 및 교사동 외벽이 검게 그을려, 2백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이른 아침시간이라, 원생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으나,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음. 원인은 당직용역업체 당직자의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음.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 신고 후, 최초 발견자인 인근 교육지원청 직원이 소화기로 먼저 진화 실시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교내 흡연금지에 대한 인식 부재(교직원 및 당직자 등 흡연자에 대한 교육 철저)

○ 흡연 후 화재의 위험을 고려하여 철저한 뒤처리 인식 변화 필요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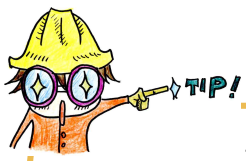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교직원들에게 흡연의 폐해와 화재발생, 건강에 대한 교육 실시

○ 방화취약지역(별관동, 체육관, 분리수거장, 창고 등) 순찰 강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체육건강교육과 학생건강사랑방>정보방, 자료방에서 흡연관련 연수자료 참고

# 교내 담뱃불 등 부주의 화재 안전(2)

## 무슨일이 있었나요?

**○○중학교 쓰레기 분리 수거장 화재 (고양)**

2014.12.24.(수) 13:10경 쓰레기 수거장에서 학생들의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조립식 경량철골조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전소하여 8백여만원의 피해 발생, 교실로 연기가 들어와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바로 귀가 조치, 학생들이 분리수거장에서 긴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며, 이후 바로 연기 발생, 자칫 해당학생들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었음.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 신고 후, 화재진압 완료, 일과 중 화재로 큰 인명피해로 커질 수 있었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학생들의 담배 등 일탈행동에 따른 화재사고발생 인식 부재
○ 교내 흡연금지에 대한 인식 부재
○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불연성 소재가 아닌 재질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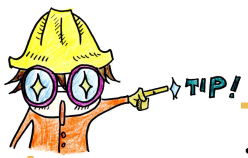


**선생님,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학생들에게 흡연의 폐해와 화재발생, 청소년 건강에 대한 교육 실시
○ 방화취약지역(별관동, 체육관, 분리수거장, 창고 등) 순찰 강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체육건강교육과 학생건강사랑방>정보방, 자료방에서 흡연관련 연수자료 참고

# 과학실험 화재안전(1)

## 무슨일이 있었나요?

**○○중학교 과학실 화재 (부천)**

1달 전에 제1과학실에서 철과 황의 실험 후 폐시약을 보관하던 중, 사고당일 2015.5.12.(화) 아침에 실험재료를 폐수처리하는 과정(철과 황을 거름종이에 걸러서 건조)에서, 제1과학실에서는 학생들 수업 중 실험이 있어, 제2과학실에서 건조시키려고 오전 중 옮김(바구니에 담아 창가쪽 벽면 실험대 라믹스 상판 위에 올려놓음), 옮긴 폐시약(황물질)이 햇빛과 반응하여 발화 된 것으로 추정, 커텐 일부와 싱크데 상판 등의 1백여만원의 피해발생, 수업시간이 아니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운동장에서 체육교구를 정리하던 체육교사가 창문에서 연기를 발견, 급히 신고하고, 먼저 소화기로 진화하여,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으나, 일과 중 발생 한 화재로서 인명피해 등 화재가 커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음.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 신고 후, 소화기로 먼저 진압, 일과 중 화재로 큰 인명피해로 커질 수 있었음.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실험폐수 처리시기가 너무 늦으며, 과학실 커텐이 방염재질이 아님

○ 사용시약에 대한 사고발생 인식 부재, 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대책 미흡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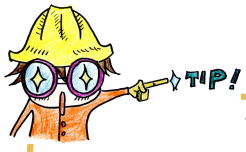


### 선생님, 이렇게 참고해주세요

○ 실험은 항상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

○ 과학실 실험 후 뒤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사용잔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실험기구 세척 후 건조시 유의)-실험폐수 오래보관 금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특성화교육과 과자료실 193~196번 실험안전메뉴얼 연수자료 및 물질안전보건(MSDN) 연수자료 반드시 참조

# 과학실험 화재안전(2)

## 무슨일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교실 화재 (용인)**

2014.10.18.(토) 14:39경 교실에서 방과 후 수업의 과정 중 과학실험을 마치고, 완성품을 교실에 보관하던 중, 사용했던 시약(수산화나트륨 추정)의 화학적 반응 추정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교실 1실 전소(내부비품 등), 교실 5실 그을음, 화재열기로 인한 지붕(슁글구조)의 피해 발생으로 3억4천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가 발생, 다행히 하교 후의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과학실이 아닌 교실에서 과학수업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더구나 화재발생 사실을 인근 주민이 연기를 보고 신고 함.

## 어떻게 처리했나요?

119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후, 5층 교실중 6실은 복구를 위해 폐쇄하고, 특별실 6실을 활용한 수업대책 마련, 4개월간의 복구소요 시간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큰 불편 초래

##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 과학실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시약을 이용한 과학수업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교실에 보관
○ 사용시약에 대한 사고발생 인식 부재
○ 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대책 미흡

---(잘라서 활용하세요~)

TIP!

### 선생님, 이렇게 참고해주세요

○ 실험은 항상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
○ 과학실 실험 후 뒤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사용잔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실험기구 세척 후 건조시 유의)-실험폐수 오래보관 금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특성화교육과 과자료실 193~196번 실험안전메뉴얼 연수자료 및 물질안전보건(MSDN) 연수자료 반드시 참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나침반


| | | | |
|---|---|---|---|
| 설치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합격의 표시, 설치 사례 | …… | 95-99 |
| 매년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 …… | 100 |
| 2년에 1회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 …… | 101-103 |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 …… | 104-105 |
| 매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 | 106-110 |
| 상시 |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시스템 | …… | 111-118 |
| 사고 |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보고 | …… | 119-121 |
| 위반시 | 벌칙 및 과태료 | …… | 122-123 |
| 안전사고사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사례 | …… | 124 |
| | 불합격시설 조치 사례 | …… | 125-126 |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대상 예외 | …… | 127-1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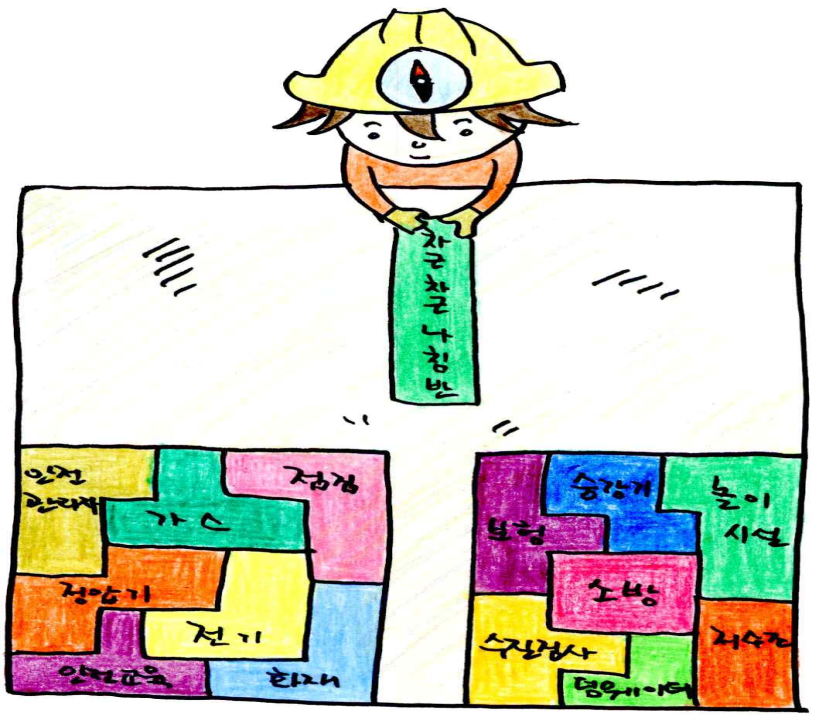

설치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나침반

| 신청자 | 검사기관 | 시기 | 내 용 |
|---|---|---|---|
| 설치자 | 안전검사 기관 |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12조)<br>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 시행규칙 제14조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꼭 확인하세요

☆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자로부터 인수받을 때 확인할 사항

◦ 어린이 놀이시설 합격증, 합격의 표시

※ 합격의 표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추가되는 시설의 경우, 해당부분만 검사가 가능하나 기존 시설과 연계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해당시설을 포함하여 검사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불합격일 경우

◦ 시설의 이용금지(법 제13조)

◦ 벌칙: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법 제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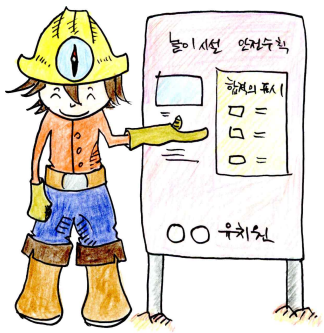

설치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21> (앞 쪽)

| 설치검사신청서(설치검사결과통지서 겸용) | | |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사)00설치공사 | ②사업자등록번호 | 128-83-0000 |
| | ③성 명(대표자) | 설치자 | | |
| | ④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0000 | | |
| | ⑤전 화 번 호 | 031-820-0000 | ⑥팩 스 번 호 | 031-820-0000 |

검 사 신 청 내 용

| ⑦어린이놀이시설명 | ⑧설치장소 | ⑨검사희망일 |
|---|---|---|
| 그네 | 운동장 | 2015. 7. 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7월 1일

신 청 인 (사)00설치공사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 사 결 과

| ①판 정 | 합격 | | |
|---|---|---|---|
| ②불합격사유 | 항 목 | 기 준 치 | 결 과 치 |
| | | | |
| ③비 고 | | | |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설치검사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
|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br>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 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br>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1.21>

## 설치검사합격증

| | | | | | | |
|---|---|---|---|---|---|---|
| ①설 치 검 사 번 호 | | X-XX-XXXX | | | | |
| 설치자 | ②상 호(명 칭) | (사)OO안전협회 | | | | |
| | ③성 명(대 표 자) | 안전해 | | | | |
| | ④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0000 | | | | |
| | ⑤전 화 번 호 | 031-832-0000 | | | | |
| 설치검사 내 용 | ⑥어린이놀이시설명 | OO유치원 | | | | |
| | ⑦설 치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0000 | | | | |
| | ⑧설 치 면 적 | 45㎡ | | | | |
| | ⑨유 효 기 간 | 2017년 7월 31일 | | | | |
| | ⑩정기시설검사 내역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의 표시

[별표 5] <개정 2015.6.30.>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시행령 제10조 관련)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 | | | | |
|---|---|---|---|---|
| 검사번호 | | 0-00-0000 | | |
| (시설번호) 시설명 | | 00유치원 | | |
| 시설 소재지 |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0000 | | |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현황 | | 미끄럼틀, 시소, 그네, 충격흡수용 모래 | | |
| 관리주체 | | 00유치원장 | 연락처 | 031-820-0000 |
| 검사자 | | 안00 | | |
| 검사내역 | 설치검사일 / 검사기관명 | 2013년 7월 31일 / (사)00안전협회 | | |
| | 정기시설검사일 / 검사기관명 | 2015년 6월 30일 / (사)00안전협회 | | |
| 유효기간 만료일 | | 2015년 7월 31일 | | |

2015년 7월 3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잘라서 활용하세요~)

TIP!

**선생님,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세요.**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시행령 제10조)**
  - **개정된 양식(별표5)으로 부착: 관리주체와 설치검사일을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전 양식이나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

# 사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의 표시

## 용인 00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표시 부착 사례

-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안내판에 검사표시 부착
- 아래 사진은 시행령 개정 전에 실시한 안전검사에 의한 합격표시이며 2015.7.1. 이후에는 변경된 양식을 부착해야함.




전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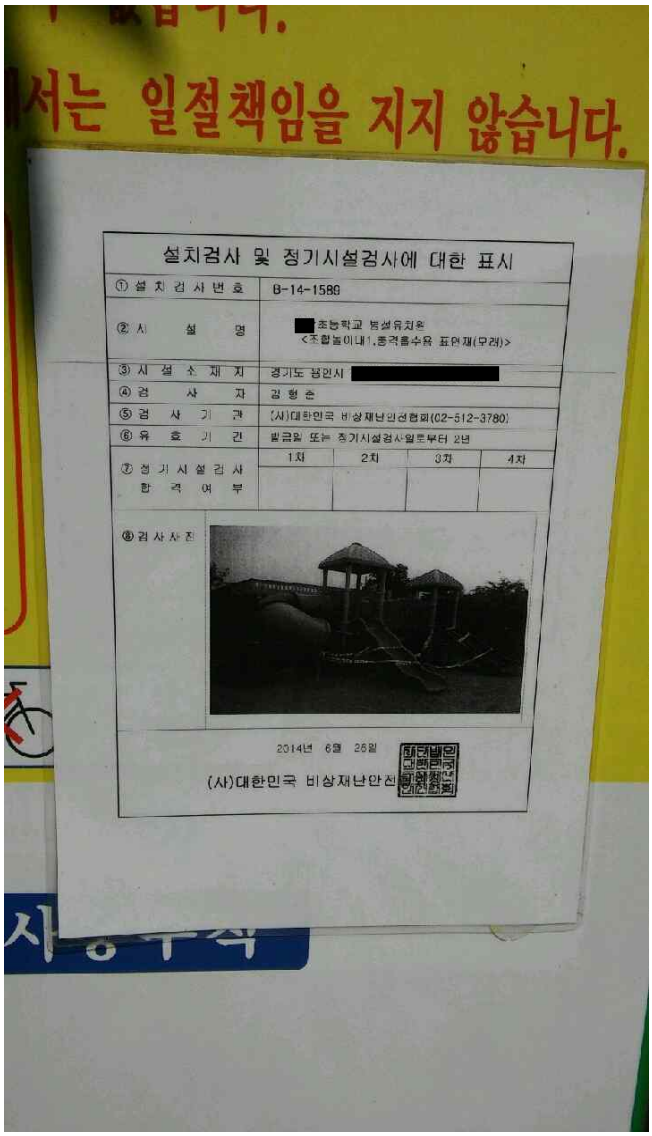


합격의 표시 부분 확대 사진

매년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나침반

| 대상 | 시기 | 내 용 |
|---|---|---|
|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21조)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꼭 확인하세요

☆ 보험의 종류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종류 및 보상한도액 : 시행령 제13조제3항 [별표7] 참조

- 사망의 경우 :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제1호)
- 부상의 경우(제2호)
-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제3호)
-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4호)
-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5호)
-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제6호)
-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2백만원(제7호)

2년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나침반

| 신청자 | 검사기관 | 시기 | 내 용 |
|---|---|---|---|
| 관리주체 | 안전검사기관 | 2년에 1회이상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 (법 12조)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 2,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꼭 확인하세요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절차




◦ 정기시설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장 약도,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놀이시설 합격증, 합격의 표시

※ 정기검사의 합격의 표시 역시, 설치검사의 합격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년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불합격일 경우

◦ 시설의 이용금지(법 제13조)

◦ 재검사 신청 :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신청

◦ 벌칙: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법 제29조)

☆ 주요 안전검사 기관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 안전검사기관 |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02-2102-2500 |
| |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 연구원 | 031-785-1280 |
| | - (사)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 02-547-3780 |
| | - 대한산업안전협회 | 02-860-7150 |
| |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02-493-0978 |
| |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02-6954-4141 |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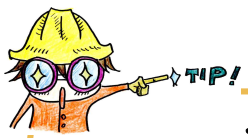


**선생님,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세요.**

-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시행령 제9조)
  -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기타 등
- 안전검사기관이 정기시설검사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현장에 참석!!

# 2년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1.21> (앞 쪽)

|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 | |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00유치원 | ②사업자등록번호 | 128-08-XXXX |
| | ③성 명(대표자) | 안전한 | | |
| | ④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0000 | | |
| | ⑤전 화 번 호 | 031-820-0000 | ⑥팩 스 번 호 | 031-820-0000 |

검 사 신 청 내 용

| ⑦어린이놀이시설명 | ⑧설치장소 | ⑨검사희망일 | ⑩재검사 신청사유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그네 | 운동장 | 2015. 7. 30.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재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7월 3일

신 청 인 00유치원장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 사 (재 검 사) 결 과

| ①판 정 | ☑ 합 격 □ 불 합 격 | | |
|---|---|---|---|
| ②불합격사유 | 항 목 | 기준치 | 결과치 |
| | | | |
| ③비 고 | | | |

귀하가 2015년 7월 3일자로 신청한 정기시설검사(재검사)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안전검사기관장 ㊞

| 신청인 제출서류(재검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 수 료 |
|---|---|
| 1. 정기시설검사결과 통지서 1부<br>2.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나침반

| 대상 | 교육주기 / 시간 | 내 용 |
|---|---|---|
| 안전관리자 | 2년에 1회 이상 / 1회당 4시간 이상 |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법 20조)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꼭 확인하세요

☆ **안전관리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이수 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봄

☆ 교육 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주택법 제 49조에 의한 안전교육

◦ 영유아 보육법 제 23조에 따른 보수교육

※ 단,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 교육기관 : 안전관리지원기관

| 교육기관 | 연락처 | 교육기관 | 연락처 |
|---|---|---|---|
|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02-2102-2714 |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02-780-4624 |
|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 연구원 | 031-785-1280 |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02-493-0978 |
| - (사)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 02-547-3780 | -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 02-861-7714 |
| - 한국생활안전연합 | 02-3476-0119 |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055-352-2276 |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02-882-0050 | - 안전모니터봉사단 | 070-4617-3440 |
| - 대한산업안전협회 | 02-860-7150 | -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 02-2635-3361 |
|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 02-573-3330 | - 한국안전협회 | 055-266-0926 |
| | | - 선진화전략연구소 | 062-515-2293 |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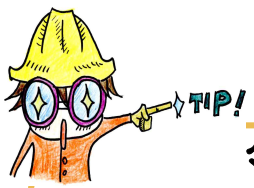


**선생님,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세요.**

1.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게한 경우, 관리주체가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음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2. 인사이동으로 새로 발령받은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전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관에서도 유효하다.
   다만, 교육받은 기관에 전화로 근무지가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매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나침반

| 신청자 | 검사기관 | 시기 | 내 용 |
|---|---|---|---|
| 관리주체 |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시설을 점검(법 15조)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7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17조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꼭 확인하세요

☆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별표6)

◦ 안전점검 항목 :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 안전점검 방법 :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안전점검 기준>

| 기준 | 내용 |
|---|---|
|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
|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

매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안전점검 결과·기록 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안전 점검 결과 기록

◦ 안전점검 결과 보관 :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 안전점검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 다만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 생략 가능(법 15조)

[별지 제16호서식]

## 안전점검실시대장(시행규칙 제17조 관련)

| 점검일 | 점검 결과 | | | | 특이사항 | 점검자 (인) |
|---|---|---|---|---|---|---|
|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 |
| 2013.7.1 | 그네 | | 미끄럼틀 | | 미끄럼틀의 표면이 거칠어져 수리필요 | 안전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매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 구 분 | 점 검 항 목 |
|---|---|
| 부대 시설 |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 |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 |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 |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
| 놀이터 공통 사항 |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 |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 |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 |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 |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 |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 |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 |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
| 그네 |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 |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 |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 | ○ 그네 줄의 꼬임 |
| |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 |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 |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 |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 |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 | ○ 금이 간 곳의 존재 |
| 미끄 럼틀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 |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
| |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 |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 |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 |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 |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 |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 |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 |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

매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 구 분 | 점 검 항 목 |
|---|---|
| 흔들 놀이 기구 |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 |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 |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 |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 | ○ 손잡이가 흔들림 |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 | ○ 기구의 금이 간 곳 |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 회전 놀이 기구 |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 | ○ 손잡이의 파손 |
| |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 | ○ 회전축이 강도 |
| |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 |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 파이프가 휘어짐 |
| |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 | ○ 금속부분의 녹슴 |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매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 구 분 | 점 검 항 목 |
|---|---|
| 오르는 기구 |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 |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 |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 |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 |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상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나침반

| 신청자 | 검사기관 | 시기 | 내 용 |
|---|---|---|---|
| 관리주체 | 안전검사기관 | 사유 발생시 | 안전점검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15조)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꼭 확인하세요

☆ 안전진단 절차(법 16조, 시행령 16조)




◦ 안전진단 신청시 구비서류: 안전진단 신청서, 어린이 놀이시설 배치도·약도

◦ 불합격한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수리보수

◦ 시설의 재사용여부 : 안전검사 기관에서 확인

☆ 안전진단 결과·기록 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안전 진단 결과 기록

◦ 안전진단 결과 보관 :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상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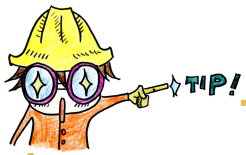


**선생님,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세요.**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기준(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 카드뮴: 4(mg/kg)이하, 비소: 25이하, 수은: 4이하, 납:200이하, 6가크롬: 5이하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상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1.21>

|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 |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00유치원 | ②사업자등록번호 | 128-08-0000 |
| | ③성 명(대 표 자) | 안전한 | | |
| | ④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0000 | | |
| | ⑤전 화 번 호 | 031-820-0000 | ⑥팩 스 번 호 | 031-820-0000 |

진 단 신 청 내 용

| ⑦어린이놀이시설명 | ⑧장 소 | ⑨설치연월 | ⑩진단희망일 |
|---|---|---|---|
| 그네 | 운동장 | 2013. 8. 30. | 2015. 7. 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7월 3일

신 청 인 00유치원장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진 단 결 과

| | |
|---|---|
| ①판 정 | |
| ②조치필요사항 | |
| ③비 고 | |

귀하가 2015년 7월 3일자로 신청한 안전진단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
|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br>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실시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시행규칙 제17조 관련)

| 신 청 | | | 진 단 | | | 담당자 (인) |
|---|---|---|---|---|---|---|
| 신청일 | 신청대상 | 신청사유 | 진단일 | 진단기관 | 진단결과 | |
| 2015.7.3. | 그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2015.7.31. | 00안전협회 | 이용금지 교체필요 | 안전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상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나침반

| 시기 | 내 용 |
|---|---|
| 상시 | -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br>- 놀이시설 설치현황, 안전검사 결과,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이용금지·폐쇄·철거에 관한 정보 등 포함 |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 2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꼭 확인하세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국민안전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 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제14조의 2 각 호의 사항

- 사고일시, 사고시설현황, 사고 경위
- 관리주제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 사고자 인적사항
-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통보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배치(신규, 변경)시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상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놀이시설현황 상세정보 화면(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주소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링크)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어린이놀이시설현황 검색화면(시설명, 주소, 시설번호 중 1가지 입력 후 검색)



상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놀이시설 상세정보 조회(안전관리자 등록여부 확인, 미등록시 등록 버튼 클릭)




◦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록 화면



상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승인요청 중(승인처리 : 관리감독기관의 장)




◦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록완료 및 변경신청

- 안전관리자 변경 시 변경 버튼 클릭(신규 등록과정과 동일하게 처리)



사고

#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보고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보고" 나침반

| 대상 | 시기 | 내 용 |
|---|---|---|
| 관리주체 | 중대한 사고 발생시 |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함(법 제22조) |

※ 관리감독기관의 장 : 교육장(법 제2조)

## 관련사이트 / 법률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및 제14조의2

◦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꼭 확인하세요

☆ 중대한 사고(시행령 제14조)

◦ 사망한 경우

◦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 골절상을 입은 경우

◦ 출혈이 심한 경우

◦ 신경 ·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내장이 손상된 경우

사고

#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보고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사항(시행령 제14조의 2)

◦ 사고일시, 사고시설 현황, 사고 경위

◦ 관리주제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 사고자 인적사항

◦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잘라서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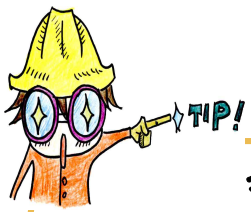


**선생님,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관련 자료의 제출과 보고(법 제23조 제1항)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현황,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현황, 관련 사고 발생 현황

[20일 이내 제출(보고)하고, 정해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사고

#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보고서

| | | | | | |
|---|---|---|---|---|---|
| 시 설 명<br>(관리주체) | 00초등학교 | | | 전화번호 | 031-820-0000 |
| 시설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0000 | | | | |
| 상해아동<br>이름 | 안안전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2004년 5월 21일 |
| 사고일자 | 2015년 7월 3일 | 사고시간 | | 오후 12시 20분 | |
| 부모성명 | 안전부 | 부모 연락처 | | 010-8265-0000 | |
| 조치내용 | - 학생이 전신시간에 정글짐에 올라가는 중 같은 반 학생이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다가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높이 2m 정도에서 바닥으로 떨어짐<br>- 다리 골절상을 입어 사고 직후 담임 교사가 부모와 통화 후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동행하여 인근 00병원에 건사하고 3일 입원조치함 | | | | |
| 사고발생<br>장소 | ☑ 실외놀이터 ☐ 실내놀이터 ☐ 부대시설 ☐ 기타 ( ) | | | | |
| 상해를<br>입은<br>기구 | ☑ 오르는기구(정글짐) ☐ 회전놀이기구 ☐ 건너는기구(평균대)<br>☐ 조합놀이대 ☐ 미끄럼틀 ☐ 흔들놀이기구(시소)<br>☐ 그네 ☐ 바닥걸림 ☐ 기타 ( ) | | | | |
| 상해의<br>유형 | ☐ 화상(열상) ☐ 뇌진탕 ☑ 골절 ☐ 삠<br>☐ 타박상 ☐ 골절/탈구 ☐ 찰과상 ☐ 내장손상<br>☐ 사망 ☐ 기타 ( ) | | | | |
| 사고원인 | ☑ 바닥으로 떨어짐 : 떨어진 높이 약 2m, 바닥의 형태 : 모래<br>☐ 놀이기구 등에 부딪힘 ☐ 놀이기구 줄에 매이거나 묶임<br>☐ 놀이기구 등에 긁힘 ☐ 놀이기구에 끼임<br>☐ 뛰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짐 ☐ 다른 유아에게 맞거나 밀림<br>☐ 기타 ( ) | | | | |
| 다친 부위<br>(좌·우<br>표시) | ☐ 머리 ☐ 눈( 좌 ,우 ) ☐ 귀( 좌 ,우 ) ☐ 코 ☐ 입<br>☐ 목 ☐ 가슴 ☐ 등 ☐ 엉덩이( 좌 ,우 )<br>☐ 생식기 ☐ 팔, 손( 좌 ,우 ) ☑ 발, 다리(좌) ☐ 내장<br>☐ 기타 ( ) | | | | |
| 작성 일자 | 2015년 7월 3일 | 작성자 서명 | | 안전희 (인 또는 서명) | |
| 확인 일자 | 2015년 7월 3일 | 확인자 서명<br>(관리주체) | | 안전한 (인 또는 서명) | |

위반

# 어린이 놀이시설 벌칙 및 과태료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벌칙" 나침반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벌 칙 |
|---|---|---|
| ○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 법 제2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과태료" 나침반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금액(만원) 기준 : 2년 |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50 | 100 | 500 |
|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40 | 80 | 400 |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30 | 60 | 200 |
| ○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30 | 60 | 200 |
| ○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30 | 60 | 200 |
| ○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사고보고의무)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30 | 60 | 200 |
| ○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자료의 제출 및 보고) | 법 제31조 제1항제7호 | 30 | 60 | 300 |

위반

# 어린이 놀이시설 벌칙 및 과태료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 나침반

| 구분 | 내용 | 근거 | 벌칙 및 과태료 |
|---|---|---|---|
| 정기시설 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 법 제12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 |
| 합격의표시 | 설치검사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법 제12조 제4항 | |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 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 |
| | 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 법 제13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법 제15조 제1항 | 과태료<br>1회 : 50만원<br>2회 : 100만원<br>3회 : 500만원 |
|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법 제15조 제1항 | 과태료<br>1회 : 40만원<br>2회 : 80만원<br>3회 : 400만원 |
| 놀이시설의 이용금지·폐쇄 · 철거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 법 제16조 제5항 | |
|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 법 제17조 제1항 | 과태료<br>1회 : 30만원<br>2회 : 60만원<br>3회 : 200만원 |
|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br>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 법 제20조 | 과태료<br>1회 : 30만원<br>2회 : 60만원<br>3회 : 200만원 |
|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7) | 법 제21조 | 과태료<br>1회 : 30만원<br>2회 : 60만원<br>3회 : 200만원 |
| 중대사고 발생보고 (보고시)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 법 제22조 제1항 | 과태료<br>1회 : 30만원<br>2회 : 60만원<br>3회 : 200만원 |
| 보고, 검사, 답변 |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제출 보고 및 답변 | 법 제23조 | 과태료<br>1회 : 30만원<br>2회 : 60만원<br>3회 : 300만원 |

사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사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사례" 나침반

☆ 주요 안전사고 사례

- 놀이터 철봉에서 떨어져 팔뼈와 견갑골 골절
- 정글짐에서 손을 헛잡아 추락, 봉에 머리를 부딪쳐 응급실 입원
- 유치원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 골절상
- 유치원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다 거꾸로 오르는 아이와 부딪혀 상대방 아이가 넘어져 다침
- 놀이터 철봉에서 놀다 사타구니를 심하게 부딪쳐 다침
- 놀이시설물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져 10바늘이 넘게 꿰매는 사고를 당함
- 원형 흔들 그네에 발을 걸어 심하게 반동을 주면서 타고 놀던 중 반동에 올라갔던 그네가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
- 놀이기구에 손가락이 끼어 상해를 입음
- 놀이터에서 놀다 미끄럼틀에 목이 얽매어 사망
- 유치원 실내 미끄럼틀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친구가 밀어 앞으로 넘어져 얼굴 찰과상
- 실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덤블링에서 뛰어놀다가 통로 기둥 사이로 넘어져 팔 골절상
- 놀이터에서 뛰어 놀던 중 바닥(우레탄)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손 골절상
- 놀이기구(회전그네)를 타고 놀다가 회전 그네 중심축이 부러지면서 흉부가 놀이기구에 눌려 사망

[출처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안전관리과,2015)]

---(잘라서 활용하세요~)

TIP!

**선생님,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세요.**

어린이 특히 유아는 머리가 크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락이나 충돌로 인한 머리의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의 설치가 중요하다.

# 사례 어린이 놀이시설 불합격 시설 조치 사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어린이 놀이시설 불합격 시설 조치" 나침반

<table>
<tr><td>
</td><td>
</td></tr>
<tr><td>이용금지 안내 현수막 부착</td><td>이용금지 안내판 놀이기구 부착</td></tr>
<tr><td></td><td></td></tr>
<tr><td>조합놀이대 이용금지(진입부 봉쇄)<br>*진입부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td><td>철봉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td></tr>
<tr><td></td><td></td></tr>
<tr><td>시소 이용금지(고정부 연결, 결박)</td><td>그네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br>*그네 안장을 고정부에 결박 보완</td></tr>
</table>

[출처 :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사례 어린이 놀이시설 불합격 시설 조치 사례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 표시" 나침반

☆ 이용금지 안내판(안) (1m × 1m)

# 이 용 금 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 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유치원장 나안전**

**(문의전화 : 031-1234-1234)**

☆ 시설별 이용금지 픽토그램(권장사항)




☆ 봉쇄 테이프(안)



사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대상 예외

## 안주무관의 차근차근 "안전관리대상 예외" 나침반

☆ 어린이놀이기구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완구로 규정한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님**

< 놀이기구와 완구 비교 >

| 구 분 | 어린이놀이기구 | 완구 |
|---|---|---|
| 안전인증 | 안전인증 대상 | 자율안전확인 대상 |
| 설치방법 | 설치업자가 설치 |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
| 고정여부 | 주로 고정식 | 주로 이동식 |
| 설치장소 |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공공장소 | 어린이집, 가정 |
| 예 시 |   |   |

# 사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대상 예외

☆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계단과 병행하여 하강통로로 활용하는 미끄럼틀이 있을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어린이 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5호에는 공산품을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건물 내부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은 품공법에서 정의한 공산품으로 보기 어려워 품공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되지 않음(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권해석)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나침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 130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 131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 132

학교석면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 133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정리 ……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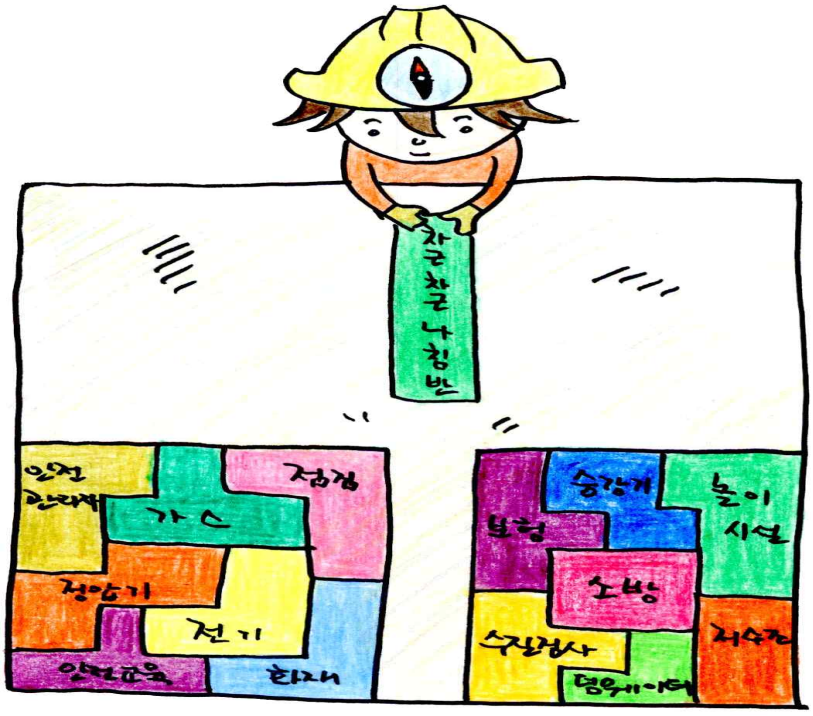

인사이동시

#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 인사이동시 주요 안전관리자 선임 사항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가스 사용시설<br>안전관리자</td><td>
◇ 관련법령<br>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안전관리자)<br>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br>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br>
◇ 선임 기준<br>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별 선임
<table>
<tr><th>저장능력</th><th>안전관리자<br>(영 제5조 제3항 별표)</th></tr>
<tr><td>250㎏ 이하</td><td>안전관리총괄자 1인</td></tr>
<tr><td>250㎏ 초과</td><td>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td></tr>
</table>
- 도시가스 월사용 규모별 선임
<table>
<tr><th>월사용량</th><th>안전관리자<br>(영 제15조 3항 별표1)</th></tr>
<tr><td>3,000㎥ 미만</td><td>안전관리총괄자 1인</td></tr>
<tr><td>3,000㎥ 이상 4,000㎥ 이하</td><td>안전관리총괄자 1인</td></tr>
<tr><td>4,000㎥ 초과</td><td>안전관리총괄자 1인,안전관리책임자 1인</td></tr>
</table>
◇ 자격: 도시가스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br>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실시기관</td><td colspan="2">-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www.kgs.or.kr)</td></tr>
<tr><td rowspan="3">교육종류</td><td>양성교육</td><td>-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부여 교육<br>- 교육이수시간: 30시간</td></tr>
<tr><td>법정전문교육<br>(신규)</td><td>- 신규(최초)로 근무하게 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br>- 교육이수시간: 7시간</td></tr>
<tr><td>법정전문교육<br>(보수)</td><td>-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br>- 교육이수시간: 3시간</td></tr>
</table>
◇ 인사이동시: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후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선임·해임·퇴직 신고
</td></tr>
</table>

인사이동시

#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 관련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자격: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 구 분 | 내 용 | |
|---|---|---|
| 실시기관 |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afe.or.kr) | |
| 교육종류 | 법정교육<br>(안전관리자) | -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교육<br>-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내에 이수<br>- 교육주기: 3년에 1회<br>- 교육이수시간: 4시간 |

◇ 인사이동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으로 통보

인사이동시

#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소방 안전관리자**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자격: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독직에 있는 자로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구 분 | 내 용 | |
|---|---|---|
| 실시기관 | -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 | |
| 교육종류 | 강습교육<br>(공공기관<br>소방안전관리자)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교육<br>- 교육이수시간: 소집교육 5일(40시간)<br>※소방안전관리자는 강습교육을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 선임해야 함 |
| | 실무교육<br>(소방안전관리자) |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br>- 교육주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br>그 이후로 2년에 1회<br>- 교육이수시간: 4시간 |

◇ 인사이동시

-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사변동 등의 사유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을 시 선임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함

인사이동시

#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학교석면 안전관리인**

◇ 관련법령

-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및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자격: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 지정
(학교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본인,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지정)

◇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구 분 | 내 용 | |
|---|---|---|
| 실시기관 | - 교육부의 「학교석면안전관리인 위탁기관」 지정 참고 (교육부고시 제2014-13호, 2014.3.21.)<br>-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 |
| 교육종류 | 학교석면 안전관리인교육 |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또는 변경) 후 1년 이내<br>- 교육이수시간: 6시간 이상 |

◇ 인사이동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 신고서를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인사이동시

# 안전관리자 선임 정리

<table>
<tr>
<td>어린이놀이시설<br>안전관리자</td>
<td>◇ 관련법령<b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동법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br>◇ 자격: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b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실시기관</td><td colspan="2">-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www.cpf.go.kr)」<br>‘안전관리지원기관’ 참조<b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15개 기관</td></tr>
<tr><td>교육종류</td><td>안전관리자<br>교육</td><td>-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br>-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br>-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br>: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br>- 교육주기: 2년에 1회 이상<br>- 교육이수시간: 4시간 이상</td></tr>
</table>
◇ 인사이동시: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교육장)에게 통보</td>
</tr>
<tr>
<td>전기<br>안전관리자<br>(대행업체)</td>
<td>◇ 관련법령<br>-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항 및 제3항<br>◇ 대상시설: 전압 600V초과, 설비용량 75KW이상의 수전설비</td>
</tr>
</table>



## 만든사람

| | | | |
|---|---|---|---|
| **소속** | 북부지역 소통 동아리(북소리) | | |
| **회장** | 김현주 | 삼숭초등학교 | 지방교육행정주사 |
| **총무** | 박연정 | 추산초등학교 | 지방교육행정주사 |
| **회원** | 지미숙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 | 조효남 | 송내중앙중학교 | 지방교육행정주사 |
| | 이영표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지방교육행정주사 |
| | 김미혜 | 덕계중학교 | 지방교육행정주사 |
| | 유희성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지방교육행정주사 |
| | 박휘진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 | 정준남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 | 김경숙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 | 장준한 | 회천초등학교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 | 허정현 | 양주백석고등학교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 | 최정우 | 고암중학교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 | 김석주 | 광사초등학교 | 지방시설관리서기 |
| | 서정원 | 삼숭초등학교 | 지방교육행정서기보 |
| **검토** | 남진희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지방시설주사 |
| | 유정상 | 덕정고등학교 | 지방시설관리서기 |
| **삽화** | 정준남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 **표지** | 정영란 | 송내중앙중학교 | 행정실무사 |

## 발행일

**발행일** 2015년 10월 31일
**발행처** 북부지역 소통 동아리(북소리)
**발행인** 북소리 회원